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나원희

2021.12.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나원희 부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발간 보고서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이 향후 재정관리시스템 개선과 재정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2-6908-8624 ✉ analysis@kpfis.or.kr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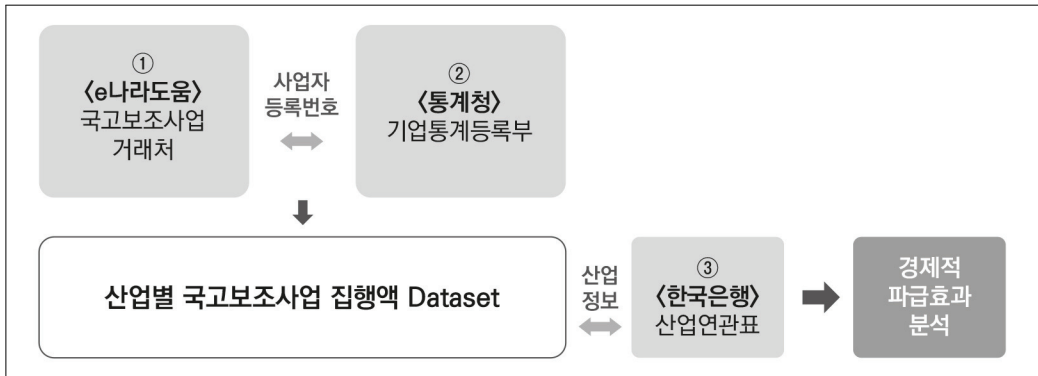
1. 분석 목적 및 필요성

- 국고보조금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경제적·정책적 기대효과의 필요성 대두
- 본 연구는 2019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의 집행내역을 통계청 기업통계 등록부와 연계하여 기업정보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거래처의 산업별 귀착효과를 분석한 최초 연구임
-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최종수혜자(거래처)의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국고보조사업이 실질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 분석자료 및 방법

- (분석자료) 2019년 기준*, e나라도움시스템, e호조, K에듀파인 자료를 모두 포괄한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거래처 집행액으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모두 포함
 - * 기업통계등록부는 2019년 자료가 최신자료이며, 통상적으로 기준년도 2년 후에 자료 확정
-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를 활용한 사업체 특성별 경제적 효과 분석이 목적임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이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집행된 것은 제외
- (분석방법) 사업자등록번호를 연결key로 ①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 정보와 ②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연계 후, ③산업연관분석 실시

[그림] 분석방법 도식화



- 산업연관분석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 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
- 국고보조사업의 생산함수가 산업연관표에 주어진 것과 동일하다면, 얼마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임. 즉 상기 효과는 기대효과를 추정한 것이며, 사업효과를 실질적으로 측정된 것이 아님
- 국민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고용유발효과 등의 파급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음
 - 생산유발효과는 최종수요가 한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
 - * 지출되는 예산이 직접적으로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교육서비스 → 교육서비스), 타 산업(교육서비스→제조업, 공공행정 등)의 제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효과라 함
 -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어떤 품목 부문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
 - 취업·고용유발효과는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산출되며, 노동계수가 고용계수인지 취업계수인지에 따라 피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 고용유발계수와 취업자(피용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수를 기준으로 한 취업유발계수로 구분

3. 분석의 한계

- 자료의 시의성, 산업연관분석의 한계, 분석의 다각화 부족 등이 존재
 - (시의성 문제)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는 기준연도에서 2년이 지난 후에 공시되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이 불가능한 점
 - (산업연관분석의 한계) 산업연관분석은 경제예측과 정책결정 자료를 위한 분석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가정에 따른 한계가 존재
 - 결합생산과 대체생산, 규모의 경제, 외부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함(즉, 한 산업은 한 상품만을 생산하고, 각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생산 방법만 존재한다고 가정함. 또한 생산수준은 투입물의 증가율만큼 증가하며, 투입계수가 고정되어 있어 각 산업마다 하나의 생산함수를 가짐)
 -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 본래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분석한 것이므로 해석 시, 국고보조사업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활용·해석할 것을 당부함
 - (분석의 다각화 부족)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과 타기관(통계청, 한국은행)의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한 최초 연구로 국고보조금을 다각도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특히, e나라도움시스템 이외의 e호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과 같은 위탁기관을 두고, 사업을 관리하는 경우는 이들 거래처의 실집행내역까지 파악하여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4. 기업정보별 국고보조사업 집행특성

- (조직형태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은 거래처가 회사법인 45.5%(19.9조원), 회사이외법인 41.3%(18.1조원)로 전체(43.8조원)의 86.8%를 집행

- 국가지방자치단체 7.4%(3.2조원), 개인사업체 4.8%(2조원), 비법인단체 1.0%(0.4조원)
- (중소기업) 중기업 10.1%(4.4조원), 소기업 14.0%(6.1조원), 소상공인 10.2%(4.5조원), 전체의 34.2%(15조원)를 집행
 -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신 분야가 전체 집행액의 55.2%를 중소기업에 집행, 공공 질서 및 안전 51.3%, 과학기술 49.9%, 문화 및 관광 49.6% 순
- (시도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은 24.9%가 서울에서 집행, 경기도 12.0%, 강원도 7.7%, 전라남도과 경상남도는 각 6.4%
 - 서울은 전체 집행액 중 52.9%를 사회복지 분야에, 세종(66.6%) 광주(20.4%) 역시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집행
 - 환경 분야에 집행액 비중이 높은 시·도는 인천(20.7%), 경기도(19.4%), 강원도 (20.5%) 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부산(29.6%), 울산(20.6)
- (산업별) 산업별 재정집행 현황은 건설업이 8.6조원(19.7%)으로 가장 많고,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6.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6%), 제조업(6.6%) 순

5. 보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산업연관표 분류에 따른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의 집행액(43.8조원)은 전체 34개 산업 중 50% 이상이 특정 산업에서 집중되어 집행
 - 건설 8.6조원(19.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은 7.0조원(16.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4.0조원(9.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2.9조원(6.6%)으로 4개 산업에 집중

□ (생산유발효과)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에 대한 재정집행이 전체 산업부문의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 즉,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분석

○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총 43.8조원 재정집행 시, 직·간접적(직접 46.2조원, 간접 30.5조원)으로 약 76.7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추정

○ 산업연관분석은 국내외 사회·경제·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최적의 효율적 재정집행을 가정한 최대 생산액 수준임

* 건설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 농림수산물 >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 (부가가치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일수록 같은 생산수준일 때 더 많은 가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총 43.8조원 재정집행 시, 총 36.9조원의 직·간접적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추정됨. 단, 부가가치유발효과 역시 재정집행이 최적의 효율적인 지출을 가정함에 따라 그 효과 역시 최고치의 부가가치 단위를 나타냄

* 건설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 농림수산물 >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 (취업·고용유발효과) 피용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취업유발효과와 피용자를 기준으로 한 고용유발효과로 구분

○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총 43.8조원 재정집행 시, 취업유발효과 532,723명*, 고용유발효과 374,553명** 추정됨. 단, 국내외 사회·경제·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최적의 효율적 재정집행 시의 최대치 노동유발효과임

* 취업유발효과 : 건설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 농림수산물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 고용유발효과 : 건설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 기타서비스

6. 사회복지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재정특성이 다른 여러 유형의 국고보조사업을 경제적 관점에서 표준적으로 접근할 시, 국고보조사업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 분야 별도 분석 필요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아동·보육,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고용, 노동

○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분야는 타 분야와 구분하여 정책대상(부문)을 구체화하여 심층 분석

□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의 집행액 기준으로 아동·보육(3.6조원)에 대한 집행액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택(1.4조원), 노인(1.4조원), 고용(1.1조원), 취약계층지원(1.1조원) 순

○ 부문별 대표 사업으로 아동·보육은 영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확충, 주택은 다가구매입임대출자, 국민임대출자 등이 해당

○ 고용은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약계층지원은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등이 해당

□ (생산유발효과) 사회복지분야 총 10.6조원 재정집행 시, 직·간접적(직접 10.9조원, 간접 5.9조원) 약 16.8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추정

○ 노동 부문에 가장 적은 재정인 218억원이 집행되었으나, 404억원(1.85배)의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 추정

○ 기초생활보장 1.77배, 노인 1.75배, 취약계층지원 1.72배, 여성·가족·청소년 1.70배, 아동·보육 1.4배

□ (부가가치유발효과) 사회복지분야 총 10.6조원 재정집행 시, 전 산업부문에 발생하는 직·간접적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총 9.4조원이 추정

○ 고용 90.3%, 주택 89.7%, 사회복지일반 89.3%, 여성·가족·청소년은 86.0%,

취약계층지원은 85.6%, 노인은 84.8%

- 생산유발효과는 노동, 기초생활보장, 노인, 취약계층지원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고용, 주택, 사회복지일반, 여성·가족·청소년이 높음
- (취업/고용유발효과) 사회복지분야의 취업유발효과는 10.6조원 집행 시, 120,428명이 유발, 고용유발효과는 100,578명 추정
-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부문은 노동, 노인, 보훈, 기초생활보장이며, 고용유발효과는 노동,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기초생활보장 부문

7. 결론

-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의 최종수혜자인 거래처 집행액 자료를 활용하여, 국고보조사업이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규명
- 국고보조사업 내역 등 단일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한 정보를 기업통계등록부와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국고보조사업 거래처의 집행액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산업의 수요창출효과가 과대계상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특정 산업에 투입된 실제 집행액에 대한 산업효과를 측정
- 산업별, 기업특성별 분류에 근거하여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화 도모 및 정책효과 극대화에 기초자료로 활용

목 차

I. 서론	1
1. 분석 필요성 및 목적	1
2. 분석 방법 및 내용	2
가. 분석 범위	2
나. 분석 방법	3
다. 분석 내용	5
라. 분석 한계	6
II. 국고보조사업 개요	8
1. 국고보조사업 개념 및 유형	8
가. 국고보조사업 개념	8
나. 국고보조금 목적 및 유형	12
2. 국고보조사업 일반현황	15
III. 분석자료 및 방법	20
1. 분석자료 연계 방법	20
가. 기업통계등록부 자료	20
나. 국고보조사업과 기업정보 연계	21
2. 분석자료 기초통계	25
가.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 집행현황	25
나. 기업특성별 재정집행 현황	28
다. 산업별 재정집행 현황	39

목 차

3. 분석방법	44
가. 산업연관분석 의의	44
나. 산업연관분석 모형	46
다. 산업연관분류	52
 IV. 분석 결과	 57
1.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57
가. 생산유발효과	57
나. 부가가치유발효과	60
다. 취업/고용유발효과	61
2. 사회복지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63
가. 일반 현황	63
나. 경제적 파급효과	69
 V. 결론	 87
1. 요약 및 정책적 함의	87
2. 연구 한계 및 향후 보완점	91
 〈참고문헌〉	 93
〈부록〉	95

표 목차

〈표 II-1〉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10
〈표 II-2〉 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의 구분	11
〈표 II-3〉 주요용어 정의	11
〈표 II-4〉 국고보조금 유형	13
〈표 II-5〉 속성분류표	15
〈표 II-6〉 국고보조금의 규모	16
〈표 II-7〉 사업형 국고보조금의 규모	16
〈표 II-8〉 분야별 사업형 국고보조금의 규모(2019)	17
〈표 II-9〉 중앙부처별 사업형 국고보조금의 규모(2019)	18
〈표 III-1〉 기업통계등록부 연계 항목	21
〈표 III-2〉 연계 항목	22
〈표 III-3〉 매칭률	22
〈표 III-4〉 분야별 분석대상(매칭률)	23
〈표 III-5〉 중앙부처별 분석대상(연계 전/후)	23
〈표 III-6〉 분야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 집행액(2019년)	25
〈표 III-7〉 중앙부처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 집행액(2019년)	26
〈표 III-8〉 조직형태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28
〈표 III-9〉 분야별 조직형태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29
〈표 III-10〉 거래처의 중소기업 현황(거래처 집행건 수)	30
〈표 III-11〉 중소기업 유형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31
〈표 III-12〉 분야별 중소기업 유형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32
〈표 III-13〉 매출규모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33
〈표 III-14〉 분야별 매출규모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34
〈표 III-15〉 분야별 매출규모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계속)	35

표 목차

〈표 Ⅲ-16〉 시도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계속)	36
〈표 Ⅲ-17〉 분야별 시도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37
〈표 Ⅲ-18〉 분야별 시도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계속)	38
〈표 Ⅲ-19〉 산업별(대분류)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40
〈표 Ⅲ-20〉 분야별 산업별(대분류)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42
〈표 Ⅲ-21〉 분야별 산업별(대분류)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계속)	43
〈표 Ⅲ-22〉 2019년 생산유발계수	47
〈표 Ⅲ-23〉 2019년 부가가치유발계수	49
〈표 Ⅲ-24〉 2019년 취업유발계수	51
〈표 Ⅲ-25〉 2019년 고용유발계수	52
〈표 Ⅲ-26〉 한국산업표준분류-산업연관표 매칭	53
〈표 Ⅲ-27〉 산업연관분류에 따른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55
〈표 Ⅳ-1〉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생산유발효과(전체)	58
〈표 Ⅳ-2〉 분야별 생산유발효과	59
〈표 Ⅳ-3〉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전체)	61
〈표 Ⅳ-4〉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취업/고용 유발효과(전체)	62
〈표 Ⅳ-5〉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전체)의 예산액 현황(2019)	65
〈표 Ⅳ-6〉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대표 사업명	66
〈표 Ⅳ-7〉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거래처 집행액(2019)	67
〈표 Ⅳ-8〉 산업연관분류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집행액	68
〈표 Ⅳ-9〉 사회복지분야 전 산업 생산유발효과	69
〈표 Ⅳ-10〉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생산유발효과(직접/간접)	70
〈표 Ⅳ-11〉 사회복지분야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72
〈표 Ⅳ-12〉 사회복지분야 산업별 생산유발효과(계속)	74

〈표 IV-13〉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부가가치유발효과	76
〈표 IV-14〉 사회복지분야 부가가치유발효과	77
〈표 IV-15〉 사회복지분야 부가가치유발효과(계속)	78
〈표 IV-16〉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취업/고용 유발효과	80
〈표 IV-17〉 사회복지분야 취업유발효과	81
〈표 IV-18〉 사회복지분야 취업유발효과(계속)	83
〈표 IV-19〉 사회복지분야 고용유발효과	84
〈표 IV-20〉 사회복지분야 고용유발효과(계속)	85

그림 목차

[그림 Ⅰ-1] 분석 범위	3
[그림 Ⅰ-2] 분석내용 도식화	5
[그림 Ⅳ-1] 사회복지분야의 부문별 예산 현황	64

I. 서론

1. 분석 필요성 및 목적

국고보조금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2012년 결산 기준 46.0조원에서 2021년 본예산 기준 97.9조원으로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출은 산업구조와 매우 밀접하므로 재정투입의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이버학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고도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터넷망 관련 업체의 생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가 TV를 구매하면 전자회사의 생산이 늘어나고 학생이 교재를 사게 되면 출판사에 생산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전자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나 출판사에 종이를 납품하는 업체의 생산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자본과 더불어 본원적 생산요소인 미래의 질 높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활동에도 파급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박경호, 2009).

본 연구는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거래처 집행규모를 파악하고, 거래처에 대한 기업특성을 파악하여 산업에 미친 거시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최종수혜자인 거래처 집행액 자료를 활용하여, 국고보조사업이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규명한 최초연구이며, 국고보조사업 내역 등 단일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한 정보를 기업통계등록부와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고보조사업 보조사업자의 거래처 정보를 활용하여 산업별로 분석하는 이유는 동일한 보조사업이라도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 수요창출이 다르게 발생할 것이 예상되며, 거래처 정보를 활용해야 실제 산업의 수요창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분석 방법 및 내용

가. 분석 범위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전체 국고보조사업 중,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사업자 ‘거래처’의 ‘집행액’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집행체계에 따라 수급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급여형과 적정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사업형의 국고보조사업이 있으나¹⁾, 본 연구에서는 급여형을 제외하고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당해연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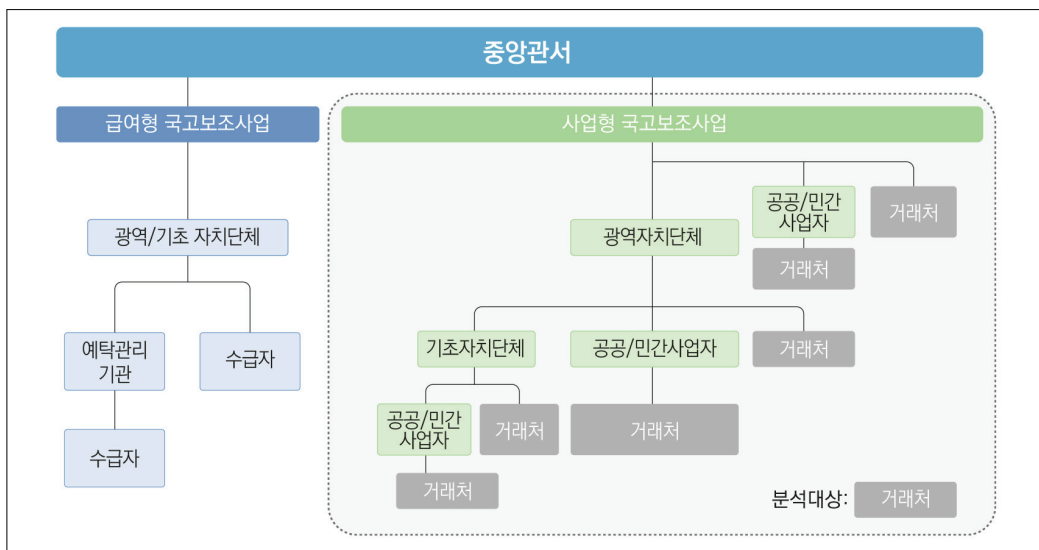
둘째, 보조사업자가 아닌 보조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거래처’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국고보조금의 실질적인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종 귀착지인 거래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 개의 보조사업자는 다양한 유형의 수많은 거래처로 해당 보조금을 지출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단일 기업 정보는 수많은 거래처를 대표할 수 없을 것이다. 거래처 집행액을 분석한 점이 본 연구가 기존연구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며,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자뿐만 아니라, e호조, K에듀파인 등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보조사업자의 거래처 내역(거래처가 개인

1) 급여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직접수행형과 위탁관리기관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위탁관리기관 지급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급여형 중 직접수행형은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복e음 등을 연계하여 수급자 자격 검증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포함하여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위탁관리기관 지급형은 위탁관리기관이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통합 예치 및 관리하고, 어린이집, 병원 등과 같이 수급자가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형은 개별 보조사업자별로 상이한 국고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형은 직접수행형과 위탁수행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형 중 직접수행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K-edufine) 등과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며, 위탁수행형 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모 등의 방식으로 선정한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한다(서정섭·김성주, 2016; 한승희(2019)에서 재인용).

(주민등록번호)은 제외)을 모두 포괄한다. 즉,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보조사업은 1천만원 이상만 해당되나, 본 연구는 1천만원 미만과 이상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업정보인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의 가장 최신연도 자료인 2019년 자료²⁾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주) 분석대상의 거래처는 사업체만 해당되며,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지출된 집행액은 제외

[그림 1-1] 분석 범위

나. 분석 방법

1) 문헌 분석

산업연관분석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 자료를 검토하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법률자료 검토, 정부지출 및 특정 산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보고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검토 등의 문헌 분석이 있었다.

2)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내역은 2020년까지 연말까지의 집행, 정산자료가 존재하나 기업통계등록부는 2019년 자료가 최신자료이다. 2020년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는 2022년에 확정됨.

2) 통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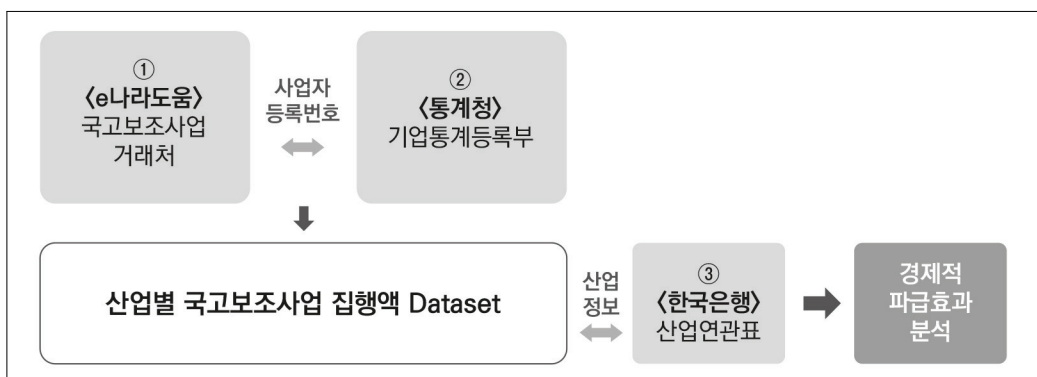
본 연구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사회계정행렬(SAM: Social Account Matrix)³⁾이나 연산일반균형(CGЕ: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과 비교하여 정밀하지 않으나, 본 연구가 가계 단위이거나 소득재분배에 대한 분석이 아니며,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분석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산업연관분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보조사업자의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방법론이 사용되는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화하여 보여줄 수 있는 방법론이며, 사회과학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이다. 산업연관분석은 미국의 레온티에프(Wassoly W. Leontief)에 의하여 1936년 최초로 고안되었다. 레온티에프는 추상적인 이론모형에 머물러 있던 왈라스의 일반균형이론을 경험적인 경제사실과 결합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로서 산업연관분석을 시도하였다(Miller and Blair, 1985; 한국은행, 2015 재인용). 산업연관표는 방법론적으로는 단기적 추정이 가능하고, 산업연관표의 작성이 2년 정도의 시차를 가진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표는 공신력을 가진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고 추정방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산업연관분석은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이 모두 가능한 분석방법으로 정부지출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수요측면, 즉 정부의 소비지출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서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취업 유발효과를 분석한다. 통계분석에 활용한 프로그램은 stata 17버전이다.

3) SAM이나 CGE 분석은 산업연관표의 해당 정보 이외에 소득계층별 소득의 흐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보통 활용한다.

다. 분석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개념 및 유형에 살펴보고, 국고보조사업의 일반 현황을 분석한다. I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 자료와 연계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자료를 구체화한다. 그리고 거래처의 기업정보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재정집행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산업별, 기업의 매출규모별, 조직형태별(개인사업체, 회사법인, 비법인단체 등)에 따른 정부의 재정집행 현황을 분석한다.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훈, 주택, 아동·보육,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등 부문별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를 파악하고, 각 부문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연구의 분석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기업통계등록부의 사업자등록번호(key)를 연결키로 하여 연계를 시도한다. 기업의 특성과 결합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자료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한다.



[그림 1-2] 분석내용 도식화

라. 분석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자료의 시의성 문제이다.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는 기준연도에서 2년이 지난 후에 공시되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이 불가능한 점이다. 특히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그간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활력 제고를 위한 신규 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나, 이에 대한 시의성 있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둘째,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의 한계이다. 산업연관분석은 경제예측과 정책결정 자료를 위한 분석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가정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결합생산과 대체생산, 규모의 경제, 외부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함으로써, 한 산업은 한 상품만을 생산하고, 각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생산 방법만 존재한다는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도록 산업부문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생산함수가 산업연관표에 주어진 것과 동일하다면, 얼마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상기 효과는 기대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경제적 분석으로 국고보조사업 본래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분석한 것이므로 해석 시, 국고보조사업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활용·해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과 타기관(통계청, 한국은행) 자료를 결합하여 경제적 분석을 최초 시도한 시범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타기관 자료와의 매칭 가능성 여부와 타기관 자료와의 결합을 통해 어떤 유형의 통계가 생산될 수 있는가의 가능성에 목적이 있었으므로 결합데이터를 다각도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e나라도움 이외, 지자체(e호조)에서 사회보장정보원과 같은 위탁기관을 두고, 사업을 관리하는 경우는 이들 거래처의 실 집행내역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분석 시, 별도의 자료분석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분야의 경

우,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보장정보원은 지자체로부터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등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실 거래처가 아닌 중간 관리자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탁기관을 두고 관리운영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거래처의 집행내역 자료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들 기관이 모두 공공행정 산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연관 분석의 결과가 공공행정 산업에서 다소 왜곡되어 분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II. 국고보조사업 개요

1. 국고보조사업 개념 및 유형

가. 국고보조사업 개념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이전재원 가운데 지출 목적과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재원이다. 전체로서는 ‘국고보조금’이지만 집행 단위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이다(이재원 외, 2021).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을 의미하며,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밖에 상당한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⁴⁾ 이 정의에 의하면, 재정지원의 유형을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째,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 또는 조장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보조금법」 제2조 제1호). 둘째, ‘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지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국민경제에 적합하게 종합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법령이 정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말하며, 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고보조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생략).

한다(기획재정부, 2015: 7). 셋째, ‘급부금’은 보조금과 부담금 외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소득보조금으로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을 말한다(「보조금법 시행령」제2조).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된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법」상 보조금을 지칭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5; 권오성(2016)에서 재인용).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중앙관서 예산상으로 민간경상보조(320-01목), 민간자본보조(320-07목),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 해외경상이전(340-01목), 해외자본이전(340-03목)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의 법령 및 규정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고보조금의 관리를 위한 최상위에는 「보조금법」과 동법 시행령이 있으며, 그 하위에 행정규칙(중앙관서)과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 「보조금법」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기본내용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반환 및 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법 시행령」은 「보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회계감사 및 부정수급자의 명단공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규칙은 각 중앙관서별로 고시, 훈령 등의 형태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형태로 제정되어 있다. 한편, 2016년 7월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했다.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은 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②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③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④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⑤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권오성, 2016).

〈표 II-1〉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구분	법령 및 규정명	법체계	주요내용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보조금 관리에 대한 기본내용 규정 ■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교부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반환 및 제재 등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보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회계감사 및 부정수급자의 명단공표 등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행정규칙	■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 ■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사업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집행관리,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사업 사후관리
4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작성지침	행정규칙	■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 보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불안정기준, 보조사업비의 변경, 수익금 관리 및 반환기준, 정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5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검증지침	행정규칙	■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 검증기관의 의무 및 선정원칙, 검증업무의 범위 및 기한, 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보고방법 및 보고사항 등
6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행정규칙	■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감사의 자격, 선임, 해임, 지정, 회계감사기준, 감사조서,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등
7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행정규칙	■ 보조사업 등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정보공시 적용범위, 공시사항, 기한, 불성실 공시에 대한 사후조치, 제재조치 등

자료 : 기획재정부, 2016; 권오성(2016)에서 재인용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보조사업자와 수령자(거래처)에 대한 정의이다. e나라도움 통합관리시스템이 개통되기 전에는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 교부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보조사업자 교부까지 관리하였으나 개통 이후 내역사업이라는 공통 집행관리 단위를 설정하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보조사업자→최종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연결하여 관리하고 있다(원종학 외, 2017).

〈표 II -2〉 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의 구분

구분		개념 및 특성	e나라도움 사용여부 및 역할
보조사업자		-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지는 자 - 보조금 교부(수령) 후 보조목적에 따른 사업 시행 -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및 보고 등 각종 의무 부담	○ - 사업신청 - 교부신청 또는 재교부 - 보조금 집행등록 - 정산/실적보고 - 반납처리 등
수령자	수급자	-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 상응한 대가없이 보조금을 수령하며 보조금 수령 후 사업시행 및 정산의무 없음 - 예)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의 수령자	× - 통합망 내 자체 역할은 없지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을 위한 과정에서 관리
	거래처	- 물품,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 정산의무가 없음 - 예) 보조사업자 기관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직원, 보조사업자가 거래대금으로 최종 집행하는 거래처	

자료 : 기획재정부(2017) ; 원종학 외(2017)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II -3〉 주요용어 정의

구분	용어해설
사업연도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사업연도
단위사업명	dBrain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정책사업을 세분화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써,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
내역사업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법 제12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
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예산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다룬 예산금액
예산편성액	당초 예산편성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설립된 예산(헌법 제54조, 국가재정법 제32조)
예산현액	당해연도와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을 관리하는 항목
예산집행계획	사업계획 등록시, 예산집행계획 한 재원별 비목별 보조금 합계 금액
집행금액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해 집행정보 등록, 요청 후 보조금 집행이 체실행 한 금액
거래처명	해당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시행하는 곳의 이름

구분	용어해설
거래처의 집행액	실제로 집행한 보조금액
교부금액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국민투표·징병 등 중앙정부가 스스로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리도모와 경비의 효율화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 e나라도움에서는 상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국비	국고보조금 사업 중 전체 사업금액에서 국가(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 금액
지자체부담금 (광역/기초)	국고보조금 사업 중 전체 사업금액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 금액
자부담금	매칭 펀드 방식 또는 일부 지원 방식의 국고보조금 사업 중 전체 사업금액에서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금액
예탁기관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하위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업무를 위탁 및 예탁 받은 기관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말함

자료 : e나라도움 용어집, e나라도움홈페이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법제처

나. 국고보조금 목적 및 유형

국고보조금의 목적은 보조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2015). ①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복지 분야의 서비스), ②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도로, 항만 사업 등 건설사업), ③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재해 복구 사업), ④신규사업의 보급·장려(협오시설 또는 주민기피시설의 설치), ⑤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 ⑥국민의 편리를 위한 사무위탁(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에 따른 경비부담), ⑦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보조금에 수반되는 지방의 부담금이 높은 상황에서는 단독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므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 유지 가능)에 있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보조금의 사용용도의 제한성 유무, 보조금 지출상 일정의 지방비부담 방식 차이, 정률보조금 규모에 대한 제한여부 기준, 법령 근거 및 경비부담 기준, 보조율의 차등기준,

보조금의 교부조건 여부, 보조금의 시행주체 기준, 보조금의 사전신청 여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따른 분류이다.

〈표 II-4〉 국고보조금 유형

구분		내용
보조금 사용용도의 제한성 유무	특정보조금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인 재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이 이에 해당
	일반보조금	용도 제한이 없는 재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
보조금의 교부조건 여부	특정보조금	지방비에 대한 부담 의무화, 사용목적 제한, 보조대상 행정 수준에 대해 규제하는 등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조건이 있음
	포괄보조금	교부조건이 특정보조금에 비해 포괄적으로 설정
지방비부담 방식	정률보조금	전체 사업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것으로, 기준 보조율, 차등보조율의 형식으로서 국고보조금의 기본적인 지원방식
	정액보조금	사업의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해서 교부하는 것으로서 매년 일정비율이 아닌 일정액을 교부
보조율의 차등기준	일률보조금	지역적인 차이 없이 모두 동일하게 보조
	차등보조금	재정이나 수요 등 필요에 따라 지역마다 차등적으로 보조
지원규모에 대한 제한여부 기준	개방형보조금	중앙정부가 총액제한 없이 분담할 비중만을 정함
	폐쇄형보조금	총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 보조금
법령근거 및 경비부담 기준	부담금	재해복구, 의료보호, 전염병 예방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 부과하는 것으로서 전액 또는 일부 부담
	교부금	선거(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국민투표, 민방위 등 중앙정부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 위임함에 있어 사업비 전액 교부
	협회의 보조금	임대주택, 농수산물시장 건립, 농공단지 건립, 경지정리와 같이 특정 행정사무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
보조금 시행주체 기준	직접보조금	자전거도로 정비, 재해 위험지구 정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보조금이라고 함
	간접보조금	경지정리사업, 양식장 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민간사업자나 타기관에 재교부

구분		내용
보조금의 사전신청 여부	신청보조금	보조사업자의 사전신청에 따라 교부
	무신청보조금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으로서 재해나 재난 등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교부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임
	민간보조금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운영비나 자금을 지원
지원내용	경상보조금	경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서 인건비나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이 해당
	자본보조금	자본적 경비 보조로서 자산취득비, 시설건축비, 토지매입지 등이 해당

자료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보고서(2016);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국고보조사업은 각 내역사업에 내재된 속성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속성정보는 보조사업의 특성 및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의 ‘꼬리표’라고도 불린다(한승희, 2018). 보조사업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공급자인 정부의 입장이 아닌 보조금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내역 사업 담당자는 기본속성 및 공통속성에 대해서는 속성분류표에 따라 등록하며, 개별속성은 통계, 관리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등록한다. 기본속성에는 내역사업 기본정보가 제공되며, 공통속성에는 내역사업별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있다. 서비스 유형별, 국내외 지역별, 성별, 생애주기별, 소득기준별, 경제활동별, 교육단위별, 기업규모별, 개인가구 구성별 등이 있다.

〈표 II-5〉 속성분류표

구분	내용
기본속성	- 사업목적 - 지원대상 및 조건 - 근거법령 - 사업기간 - 보조형태(정액·정률, 국고·지자체·자기부담금 비율) - 보조사업 유형(급여형·사업형, 직접수행형·위탁수행형·복합수행형) - 성질구분(계속·신규, 대외비 여부) - 보조경로
공통속성	- 서비스 유형별(행정/통일/외교 지원, 안전보장, 교육보장, 문화활동, 관광/휴양활동/종교활동/환경향상 등) - 국내·외 지역별 - 성별(남/여) - 생애주기(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 소득기준(기초생활보호대상, 차상위/차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기타 취약계층 등) - 경제활동(사회초년생, 근로자·직장인,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축산업인, 취업모, 실업자·구직자, 창업자, 자영업자) - 교육단위별(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대학원생) - 기업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개인가구 구성(다문화 가족, 이주배경 청소년, 새터민, 한부모, 신혼부부, 임신·출산,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개별속성	- 부처별 자율관리

자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2. 국고보조사업 일반현황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59.6조원에서 2021년 본예산 기준 97.9조원으로 연평균 1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국고보조금 중 약 76%가 자치단체보조금이며, 약 24%가 민간보조이다.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을 2017년과 비교하여 꾸준히 증가추세이며, 그중 자치단체보조 보다 민간보조에 대한 비중이 연평균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6〉 국고보조금의 규모

(단위: 조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국고보조금 규모	59.6	66.9	77.9	86.7	97.9	13.2
- 자치단체보조 (전체 보조금 대비 비중)	46.4 (77.9)	50.2 (75.0)	58.8 (75.5)	65.6 (75.7)	74.8 (76.4)	12.7
- 민간보조 (전체 보조금 대비 비중)	13.2 (22.1)	16.8 (25.1)	19.1 (24.5)	21.1 (24.3)	23.1 (23.6)	15.0
총예산	400.5	428.8	469.6	512.3	558.0	8.6
총예산 대비 보조금 비율	14.9	15.6	16.6	16.9	17.5	4.2

주) 국회확정 본예산 기준

자료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자료추출 : 2021.9.기준)

국고보조금의 보조사업 유형에 따라 사업형과 급여형으로 구분되는데, 사업형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은 2021년 전체 국고보조사업 규모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3.7조원(54.9%)이다. 2017년과 비교하여 사업형 국고보조금은 약 13.3조원이 증가하였고, 2017~2021년까지 4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나타났다. 직불금, 보상금, 지원금 등 일정 자격 요건이 되면 지급되는 사업자금 형태의 보조사업인 “급여형 보조사업”은 2021년 기준, 44.1조원(45.1%)이며, 연평균 증가율이 23.1%로 4년간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표 II-7〉 사업형 국고보조금의 규모

(단위: 조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전체	59.6	66.9	77.9	86.7	97.9	13.2%
- 사업형 국고보조금 (비중)	40.4 (67.8)	40.2 (60.1)	43.5 (55.9)	48.7 (56.1)	53.7 (54.9)	7.4%
- 급여형 국고보조금 (비중)	19.2 (32.2)	26.7 (39.9)	34.4 (44.1)	38.1 (43.9)	44.1 (45.1)	23.1%

주 1) 국회 확정 본 예산 기준

자료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자료추출 : 2021.9.기준)

분야별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국고보조금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77.9조원에서 59.2%인 약 46조원 규모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농림수산분야 11.5%, 환경분야 6.1%, 문화 및 관광분야 6.0% 순으로 이들을 모두 합치면 국고 보조사업 전체 77.9조원 중 64.4조원으로 82.7%의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의 보조사업 유형은 사업형 26.6%이며, 급여형 73.4%로 대부분이 급여형 보조사업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의 사업형 26.6%인 12.2억원은 전체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에서는 28.1%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사회복지분야를 제외한 농림수산분야, 환경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사업형 보조사업이 100% 혹은 9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8〉 분야별 사업형 국고보조금의 규모(2019)

(단위: 억원, 건, %)

분야	예산액 (A)	보조사업유형별				내역 사업수	보조 사업수
		사업형(B)		급여형(C)			
		당초예산액	비중 (B/A)	당초예산액	비중 (C/A)		
전체	778,979	435,252	55.9	343,726	44.1	4,629	236,147
사회복지	460,974	122,493	26.6	338,480	73.4	659	58,731
농림수산	89,548	85,506	95.5	4,042	4.5	952	65,867
환경	47,338	47,338	100.0	-	0.0	262	11,709
문화및관광	46,504	46,391	99.8	112	0.2	1,119	42,42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6,758	36,758	100.0	-	0.0	410	10,437
교통및물류	26,881	26,362	98.1	519	1.9	300	3,945
국토및지역개발	18,799	18,799	100.0	-	0.0	107	3,336
보건	16,536	16,073	97.2	463	2.8	323	27,230
공공질서및안전	11,147	11,077	99.4	71	0.6	96	4,403
통일·외교	8,656	8,656	100.0	-	0.0	45	1,718
일반·지방행정	7,800	7,798	100.0	2	0.0	157	3,123
통신	3,838	3,838	100.0	-	0.0	81	1,253
교육	2,460	2,423	98.5	37	1.5	76	1,221

분야	예산액 (A)	보조사업유형별				내역 사업수	보조 사업수
		사업형(B)		급여형(C)			
		당초예산액	비중 (B/A)	당초예산액	비중 (C/A)		
국방	1,284	1,284	100.0	-	0.0	14	71
과학기술	456	456	100.0	-	0.0	28	682

주 1) 국회 확정 본 예산 기준

2) 예산액(A)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자료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자료추출 : 2021.9.기준)

중앙부처별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건복지부가 47.7%인 37조 1,693억원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8.8%), 고용노동부(8.2%), 국토교통부(8.2%), 환경부(6.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 -9〉 중앙부처별 사업형 국고보조금의 규모(2019)

(단위: 억원, 건, %)

중앙부처	예산액 (A)	보조사업유형별				내역 사업수	보조 사업수
		사업형(B)		급여형(C)			
		당초예산액	비중 (B/A)	당초예산액	비중 (C/A)		
전체	778,979	435,252	55.9	343,727	44.1	4,629	236,147
보건복지부	371,693	100,807	27.1	270,886	72.9	621	55,132
농림축산식품부	68,199	64,314	94.3	3,885	5.7	492	36,407
고용노동부	63,945	16,683	26.1	47,262	73.9	88	4,260
국토교통부	63,906	47,462	74.3	16,444	25.7	284	6,255
환경부	47,026	47,026	100.0	-	0.0	245	11,346
문화체육관광부	38,101	38,101	100.0	-	0.0	926	37,873
산업통상자원부	23,824	23,824	100.0	-	0.0	291	6,448
행정안전부	16,178	15,844	97.9	334	2.1	151	10,002
중소벤처기업부	12,964	12,964	100.0	-	0.0	120	3,578
해양수산부	12,867	12,372	96.2	495	3.8	324	7,925
산림청	10,755	10,613	98.7	142	1.3	186	15,087
여성가족부	9,379	7,206	76.8	2,173	23.2	119	11,283
통일부	7,743	7,743	100.0	-	0.0	24	4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458	7,458	100.0	-	0.0	202	3,250

중앙부처	예산액 (A)	보조사업유형별				내역 사업수	보조 사업수
		사업형(B)		급여형(C)			
		당초예산액	비중 (B/A)	당초예산액	비중 (C/A)		
문화재청	5,137	5,024	97.8	112	2.2	93	3,486
기획재정부	4,348	3,992	91.8	357	8.2	19	1,344
교육부	3,772	2,423	64.2	1,349	35.8	77	4,562
농촌진흥청	1,887	1,887	100.0	-	0.0	66	8,504
법무부	1,720	1,692	98.4	28	1.6	39	977
국가보훈처	1,661	1,444	86.9	216	13.0	94	3,014
국방부	1,259	1,259	100.0	-	0.0	10	31
식품의약품안전처	1,003	1,003	100.0	1	0.1	27	2,477
외교부	830	830	100.0	-	0.0	7	308
특허청	709	709	100.0	-	0.0	13	398
경찰청	702	659	93.9	43	6.1	3	32
소방청	492	492	100.0	-	0.0	6	16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49	449	100.0	-	0.0	5	4
대법원	302	302	100.0	-	0.0	7	434
방송통신위원회	166	166	100.0	-	0.0	14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7	117	100.0	-	0.0	3	2
국회	97	97	100.0	-	0.0	13	15
금융위원회	90	90	100.0	-	0.0	13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83	83	100.0	-	0.0	14	951
국세청	40	40	100.0	-	0.0	1	0
방위사업청	25	25	100.0	-	0.0	4	40
해양경찰청	17	17	100.0	-	0.0	2	6
공정거래위원회	13	13	100.0	-	0.0	20	49
새만금개발청	11	11	100.0	-	0.0	2	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7	7	100.0	-	0.0	2	3
국가인권위원회	2	2	100.0	-	0.0	1	12
국민권익위원회	2	2	100.0	-	0.0	1	9

주 1) 국회 확정 본 예산 기준

2) 예산액(A)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자료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자료추출 : 2021.9.기준)

Ⅲ.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연계 방법

가. 기업통계등록부 자료

기업통계등록부(Statistical Business Registers: SBR)는 통계조사, 통계분석을 위한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도록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융복합하여 주민번호와 같이 기업번호로 관리하는 일원화된 경제통계 부문 통합모집단이다(통계청). 2017년에 2015회계연도 기준으로 시범 구축한 이후, 매년 작성되고 있으며 수록 정보에는 산업별, 지역별(사업체) 주소 등 기본 사업체 특성정보 및 종사자 및 매출액 정보를 포함하며, 수록 모집단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와 통계청에서 현장 조사된 사업체를 통합하여 구축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기업체 고유번호로 관리된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보조사업자의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key값으로 하여 기업통계등록부 상의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매칭하면 거래상대방 특성에 따른 집행구조 파악이 가능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 기업체, 기업집단의 통계단위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일 산업활동을 하며, 활동유형 단위의 분류인 사업체 단위를 활용하였다. 그밖에 기업통계등록부의 조직형태, 기업규모, 매출액규모, 사업존속기간, 지역 등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표 Ⅲ-1〉 기업통계등록부 연계 항목

구분	분류
표준산업분류 (21)	①농업, 임업 및 어업 ②광업 ③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⑤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⑥건설업 ⑦도매 및 소매업 ⑧운수 및 창고업 ⑨숙박 및 음식점업 ⑩정보통신업 ⑪금융 및 보험업 ⑫부동산업 ⑬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⑭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⑮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⑯교육 서비스업 ⑰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⑱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⑲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⑳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㉑국제 및 외국기관
조직 형태 (5)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③회사이외법인 ④비법인단체 ⑤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규모 (5)	①상출기업 ②기타대기업 ③중견기업 ④중기업 ⑤소기업
매출액규모1) (13)	①100만원이하 ②5천~1억미만 ③1~5억미만 ④5~10억미만 ⑤10~50억미만 ⑥50~100억미만 ⑦100~200억미만 ⑧200~400억미만 ⑨400~600억미만 ⑩600~800억미만 ⑪800~1,000억미만 ⑫1,000~1,500억미만 ⑬1,500억 이상
지역 (17)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세종 ⑨경기 ⑩강원 ⑪충북 ⑫충남 ⑬전북 ⑭전남 ⑮경북 ⑯경남 ⑰제주

주 1) 매출액 규모는 분포 비중을 고려하여 저자가 임의로 구분함

자료 :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이용자 안내서

나. 국고보조사업과 기업정보 연계

사업자등록번호(key)를 활용하여 국고보조사업의 거래처 정보(e나라도움)와 기업통계등록부(통계청)의 사업체 정보를 연계하였다. 기업통계등록부는 매년 12월 전년 기준 작성되어 다음연도 3월에 확정되므로 현재 활용가능한 가장 최신자료는 2019년 자료이다. 국고보조사업의 거래처 정보와 기업통계등록부의 연계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Ⅲ-2〉 연계 항목

국고보조사업	key	기업통계등록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보조사업명		· 표준산업분류
· 보조사업상세유형		· 매출액 규모
· 보조사업 거래처명		· 기업규모(대·중견·중소)
· 보조사업 세목코드		· 사업기간
· 보조사업 거래처 집행액 (합계, 국비, 지자체, 자부담)		· 지역
		· 대표자 성별, 연령 등

국고보조사업 거래처 정보와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매칭률은 98.3%로 전체 국고보조사업 자료 1,901,563건 중 1,870,087건(98.3%)이 기업통계자료와 연계되었다. 사업자등록번호 오류, 기업통계등록부에 ‘자료없음’ 등의 이유로 31,476건은 연계되지 않았다. 연계된 자료(1,870,087건) 중 개업일자 오류(개업일자보다 폐업일자가 먼저인 경우, 개업일자가 추출시점보다 이후인 경우 등) 7건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분석자료는 1,870,080건⁵⁾이다.

〈표 Ⅲ-3〉 매칭률

구분	Freq.	Percent
전체	1,901,563	100.0%
- 비매칭	31,476	1.7%
- 매칭	1,870,087	98.3%
- 오류 데이터 제외	7	-
분석자료	1,870,080	-

국고보조사업 거래처 정보와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연계 이후, 분야별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체 매칭률 98.3%이며, 매칭률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는 농림수산 97.1%, 국방 96.0%, 통신 93.9% 등이 해당된다.

5) 이는 단일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거래처를 기준으로 연계하나, 1개의 거래처에 여러 건의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거래처 집행 숫자임

〈표 Ⅲ-4〉 분야별 분석대상(매칭률)

(단위: 건, %)

분야명	연계 전(A)	연계 후(B)	매칭률(B/A)
전체	1,901,563	1,870,080	98.3
(1) 일반·지방행정	29,093	28,848	99.2
(2) 공공질서및안전	49,680	49,324	98.4
(3) 통일·외교	15,292	15,068	99.1
(4) 국방	2,229	2,164	96.0
(5) 교육	22,739	22,621	98.6
(6) 문화및관광	434,178	432,191	98.7
(7) 환경	81,562	76,552	100.0
(8) 사회복지	514,114	504,043	99.3
(9) 보건	170,692	166,506	98.5
(10) 농림수산	260,298	256,122	97.1
(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83,877	182,310	99.5
(12) 교통및물류	64,520	61,942	99.5
(13) 통신	33,847	33,380	93.9
(14) 국토및지역개발	34,199	33,767	98.0
(15) 과학기술	5,243	5,242	97.5

중앙부처별 국고보조사업 거래처 정보와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연계현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외교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거래처 정보가 97% 이상, 기업통계등록부 자료와 연계되었다. 자료의 매칭률이 낮은 이유는 사업자등록번호 미입력 및 오류에 의한 것이다.

〈표 Ⅲ-5〉 중앙부처별 분석대상(연계 전/후)

중앙부처명	연계 전(A)	연계 후(B)	매칭률(B/A)
전체	1,901,563	1,870,087	98.3
(006) 국회	1,110	1,108	99.8
(007) 대법원	2,025	1,976	97.6
(0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3	173	100.0
(01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9	29	100.0
(013) 법무부	20,351	20,317	99.8
(014) 국방부	2,229	2,164	97.1

중앙부처명	연계 전(A)	연계 후(B)	매칭률(B/A)
(019) 고용노동부	66,737	66,594	99.8
(022) 통일부	12,674	12,499	98.6
(024) 국가보훈처	20,584	20,556	99.9
(025) 산림청	49,181	47,816	97.2
(026) 국세청	8	8	100.0
(029) 농촌진흥청	32,217	32,000	99.3
(031) 특허청	12,053	11,838	98.2
(034) 환경부	79,881	74,908	93.8
(037) 경찰청	245	245	100.0
(040) 공정거래위원회	511	509	99.6
(04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458	1,449	99.4
(052) 문화재청	30,572	30,489	99.7
(056) 국가인권위원회	277	277	100.0
(06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6	16	100.0
(069) 기획재정부	3,409	3,318	97.3
(072) 문화체육관광부	377,491	375,621	99.5
(075) 보건복지부	411,258	398,386	96.9
(076) 여성가족부	116,403	115,882	99.6
(078) 방송통신위원회	468	468	100.0
(079) 금융위원회	351	351	100.0
(080) 국민권익위원회	275	275	100.0
(086) 교육부	22,739	22,621	99.5
(087) 외교부	1,160	1,120	96.6
(089) 농림축산식품부	158,618	156,243	98.5
(094) 산업통상자원부	77,950	77,647	99.6
(095) 국토교통부	89,278	86,181	96.5
(096) 해양수산부	30,581	30,283	99.0
(097) 식품의약품안전처	26,803	26,701	99.6
(099) 새만금개발청	65	65	100.0
(101) 행정안전부	82,544	81,751	99.0
(102) 중소벤처기업부	93,064	92,013	98.9
(103) 소방청	9,979	9,898	99.2
(112) 해양경찰청	19	19	100.0
(1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6,777	66,273	99.2

2. 분석자료 기초통계

가.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 집행현황

2019년의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거래처 집행액 합계는 43.8조원⁶⁾이며, 그 중 국비 28.7조원, 광역 6.9조원, 기초 7.0조원, 자부담 1.3조원이다.

〈표 Ⅲ -6〉 분야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 집행액(2019년)

(단위: 억원, %, 건)

분야명	집행액						거래처 집행건수1)
	합계		국비	광역	기초	자부담	
	금액	비중					
전체	438,560	100.0	286,831	68,747	70,411	12,570	1,870,080
사회복지	106,458	24.3	67,497	23,315	15,000	645	504,043
농림수산	88,127	20.1	62,125	7,656	14,871	3,475	256,122
문화및관광	52,317	11.9	33,306	7,203	10,385	1,422	432,191
환경	47,855	10.9	28,335	7,046	12,159	314	76,552
교통및물류	41,049	9.4	24,885	10,036	2,970	3,159	61,94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9,995	9.1	32,423	2,499	2,973	2,101	182,310
국토및지역개발	19,851	4.5	11,114	4,834	3,561	342	33,767
공공질서및안전	14,126	3.2	7,535	1,968	4,115	509	49,324
보건	10,749	2.5	5,857	2,878	1,984	30	166,506
일반·지방행정	10,366	2.4	6,998	1,072	2,255	41	28,848
통신	3,758	0.9	3,489	0	2	266	33,380
교육	2,247	0.5	2,027	1	14	205	22,621
과학기술	724	0.2	435	164	70	55	5,242
통일·외교	522	0.1	450	50	16	6	15,068
국방	417	0.1	358	25	34	-	2,164

주 1) 집행건수는 거래처수 기준이며, 동일 거래처에 여러건 집행된 경우 각각 카운트됨

2) 집행액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자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출기준 : 2021.7.)

6)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집행액 43.8조원은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중, 사업자(거래처)로 집행건만 해당되며,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집행된 금액 약 10% 정도는 제외됨

분야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 집행현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10.6조원)이며, 다음으로 농림수산 8.8조원, 문화 및 관광 5.2조원이다. 위 세 개 분야의 합계가 24.7조원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분야에서 50% 이상 국비 비중이 높았으며, 광역과 기초의 비중이 40% 이상인 분야는 보건(45.2%), 공공질서 및 안전(43.1%), 국토 및 지역 개발(42.3%), 환경(4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부담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차이일 것이다.

중앙부처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거래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전체 중 17.0% 집행, 국토교통부 15.3%, 농림축산식품부 13.9%, 환경부 10.8%, 문화체육관광부 10.1%로 전체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거래처 집행액의 약 67%를 5개 중앙부처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43.8조원 중 국비가 28.7조원으로 약 65.4%를 차지하며, 광역은 15.7%, 기초는 16.1%, 자부담은 2.9%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의 대부분은 50% 이상 국비로 지출되며, 행정안전부(49.8%), 농촌진흥청(46.2%), 소방청(27.8%)이 유일하게 광역과 기초의 부담 비중이 높았다.

〈표 Ⅲ-7〉 중앙부처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 집행액(2019년)

(단위: 억원, 건)

소관명	집행액						거래처 집행건수 ¹⁾
	합계		국비	광역	기초	자부담	
	금액	비중					
전체	438,560	100.0	286,831	68,747	70,411	12,570	1,870,080
보건복지부	74,595	17.0	44,498	16,498	13,544	55	398,385
국토교통부	66,912	15.3	40,239	20,000	6,068	605	86,181
농림축산식품부	60,906	13.9	45,500	3,802	9,125	2,478	156,241
환경부	47,162	10.8	28,035	6,881	11,932	314	74,908
문화체육관광부	44,333	10.1	27,450	6,207	9,596	1,080	375,620
산업통상자원부	27,528	6.3	20,968	2,450	2,188	1,921	77,647
행정안전부	23,445	5.3	11,677	4,129	7,569	70	81,751
해양수산부	16,215	3.7	9,775	1,155	1,616	3,670	30,283
산림청	15,311	3.5	8,894	2,667	3,551	199	47,816

소관명	집행액						거래처 집행건수 ¹⁾
	합계		국비	광역	기초	자부담	
	금액	비중					
중소벤처기업부	12,735	2.9	11,423	392	743	178	92,013
고용노동부	11,144	2.5	10,318	307	164	355	66,59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929	1.8	6,879	277	114	659	66,273
여성가족부	6,974	1.6	4,119	1,344	1,506	5	115,882
기획재정부	4,790	1.1	4,049	315	427	0	3,318
문화재청	4,573	1.0	2,792	987	790	5	30,488
농촌진흥청	2,729	0.6	1,262	328	1,090	49	32,000
교육부	2,247	0.5	2,027	1	14	205	22,621
법무부	2,148	0.5	1,409	217	21	501	20,316
국가보훈처	1,613	0.4	1,368	13	35	197	20,556
식품의약품안전처	1,298	0.3	818	240	236	4	26,701
경찰청	653	0.1	653	-	-	-	245
특허청	603	0.1	601	-	0	1	11,838
소방청	599	0.1	166	412	20	0	9,89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45	0.1	445	-	-	-	173
국방부	417	0.1	358	25	34	-	2,164
통일부	319	0.1	299	4	11	6	12,49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88	0.0	138	49	-	-	16
방송통신위원회	161	0.0	161	-	-	-	468
외교부	159	0.0	107	47	5	0	1,120
대법원	140	0.0	124	-	16	-	1,976
국회	87	0.0	87	-	-	-	1,108
금융위원회	76	0.0	65	-	-	12	35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4	0.0	44	-	-	-	1,449
국세청	38	0.0	38	-	-	-	8
해양경찰청	17	0.0	17	-	-	-	19
새만금개발청	11	0.0	11	-	-	-	65
공정거래위원회	9	0.0	9	0	-	0	50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	0.0	6	-	-	-	29
국민권익위원회	1	0.0	1	-	-	0	275
국가인권위원회	1	0.0	1	-	-	0	277

주 1) 집행건수는 거래처수 기준이며, 동일 거래처에 여러건 집행된 경우 각각 카운트됨

2) 집행액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자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출기준 : 2021.7.)

나. 기업특성별 재정집행 현황

조직형태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행액이 많은 거래처의 조직형태는 회사법인 혹은 회사이외법인이며 ‘회사법인’인 경우, 집행액이 전체 43.8조원 중 19.9조원(전체 중 45.5%)이고 ‘회사이외법인’은 18.1조원(전체 중 41.3%)이다. ‘회사법인’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어 법인격을 갖춘 사업체를 말하며,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해당된다. ‘회사이외법인’은 민법에 의한 재단·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을 말하며, 의료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법무법인 등, 정부투자기관(공사,공단 등), 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등이 해당된다. 그밖에 ‘개인사업체’는 개인이 혼자 소유·경영하거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체로 정의되며, ‘비법인단체’는 법인격이 없는 문화단체, 경기후원단체, 후원회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이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주민센터, 국립대학교, 국·공립 초중고교 등이 해당된다.

〈표 III-8〉 조직형태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단위: 억원, 건, %)

구분	집행액						거래처 집행건수
	합계		국비	광역	기초	자부담	
	금액	비중					
전체	438,560	100.0	286,831	68,747	70,411	12,570	1,870,080
개인사업체	20,978	4.8	13,256	2,749	3,841	1,131	808,596
회사법인	199,454	45.5	123,386	31,679	35,857	8,533	670,466
회사이외법인	181,279	41.3	126,543	28,533	23,396	2,807	240,988
비법인단체	4,409	1.0	2,352	946	1,095	15	60,703
국가지방자치단체	32,440	7.4	21,294	4,840	6,222	84	89,327

자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출자료와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표 III-9〉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을 비롯한 공공질서 및 안전, 국방, 문화 및 관광, 환경 등에서의 집행은 거래처가 ‘회사법인’이 많았으며, 통일·외교, 교육, 사회복지의 경우는 의료법인, 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회사이외법인’ 조직형태로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분야별 조직형태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단위: 억원, %)

분야명	합계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집행액	비중	집행액	비중	집행액	비중	집행액	비중	집행액	비중
전체	438,560	20,978	4.8	199,454	45.5	181,279	41.3	4,409	1.0	32,440	7.4
일반·지방행정	10,366	326	3.1	4,298	41.5	2,487	24.0	248	2.4	3,006	29.0
공공질서 및 안전	14,126	384	2.7	8,702	61.6	3,595	25.4	271	1.9	1,175	8.3
통일·외교	522	44	8.4	186	35.7	232	44.4	3	0.5	57	11.0
국방	417	15	3.7	289	69.4	105	25.1	-	-	7	1.8
교육	2,247	123	5.5	378	16.8	1,621	72.2	0	0.0	124	5.5
문화 및 관광	52,317	4,420	8.4	28,753	55.0	15,844	30.3	371	0.7	2,928	5.6
환경	47,855	1,339	2.8	32,747	68.4	8,948	18.7	67	0.1	4,754	9.9
사회복지	106,458	3,425	3.2	14,375	13.5	75,213	70.7	3,055	2.9	10,388	9.8
보건	10,749	1,483	13.8	4,473	41.6	3,980	37.0	49	0.5	764	7.1
농림수산	88,127	5,858	6.6	43,004	48.8	35,943	40.8	161	0.2	3,161	3.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9,995	2,437	6.1	15,903	39.8	20,110	50.3	134	0.3	1,410	3.5
교통 및 물류	41,049	490	1.2	30,881	75.2	7,685	18.7	42	0.1	1,952	4.8
통신	3,758	122	3.2	2,662	70.8	938	25.0	0	0.0	36	1.0
국토 및 지역개발	19,851	461	2.3	12,315	62.0	4,453	22.4	8	0.0	2,615	13.2
과학기술	724	50	6.8	486	67.1	126	17.4	0	0.0	62	8.6

주) 파란색 네모박스는 조직형태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을 표시함

자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출자료와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집행건수 기준) 중 약 62.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해당되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소기업 중 1)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이면서, 2)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사업체의 조직형태가 대체로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인 경우, 중소기업이 많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을 초과한 경우, 당해연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집단 분류가 대기업인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분류미상은 457,679건으로 전체 중 약 24.5%의 비중이며, 대기업에 해당되는 회사법인 혹은 회사이외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표 Ⅲ-10〉 거래처의 중소기업 현황(거래처 집행건 수)

구분	보조사업자의 거래처		개인 사업체	회사법인	회사 이외법인	비법인 단체	국가지방 자치단체
	거래처 집행건수	비중					
전체	1,870,080	100.0	808,596	670,466	240,988	60,703	89,327
중기업	136,222	7.3	39,152	97,070	0	0	0
소기업	235,134	12.6	76,619	158,515	0	0	0
소상공인	799,511	42.8	684,800	114,711	0	0	0
중소기업 제외	241,534	12.9	4,242	47,049	124,090	60,580	5,573
- 산업분류 해당안됨1)	184,648	9.9	74	794	117,627	60,580	5,573
- 매출액 없음(0원)	4,999	0.3	4,054	945	0	0	0
-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 초과	18,606	1.0	114	18,492	0	0	0
- 당해연도 자산총액 5천억 이상	10,484	0.6	0	4,021	6,463	0	0
- 기업집단 분류 대기업	22,797	1.2	0	22,797	0	0	0
분류미상2)	457,679	24.5	3,783	253,121	116,898	123	83,754

주 1) 산업분류 NULL(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와 사업자등록번호 NULL

2) 분류미상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됨.

자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출자료와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중소기업으로의 집행액은 중기업 4.4조원, 소기업 6.1조원, 소상공인 4.5조원으로 합계 약 15.0조원이며, 이는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거래처 집행액 전체 43.8조원 중 약 34.3%(중기업 10.1%, 소기업 14.0%, 소상공인 10.2%)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분류미상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은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된다.

〈표 Ⅲ-11〉 중소기업 유형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단위: 억원, 건, %)

구분	집행액						거래처 집행건수
	합계		국비	광역	기초	자부담	
	금액	비중					
전체	438,560	100.0	286,831	68,747	70,411	12,570	1,870,080
중기업	44,090	10.1	25,886	7,534	8,705	1,965	136,222
소기업	61,486	14.0	37,480	8,848	13,328	1,830	235,134
소상공인	44,777	10.2	26,864	6,003	9,971	1,939	799,511
중소기업 제외	82,131	18.7	51,995	15,902	11,126	3,108	241,534
- 산업분류 해당안됨1)	56,017	12.8	35,649	10,468	9,063	837	184,648
- 매출액 없음(0원)	525	0.1	306	51	152	17	4,999
-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 초과	6,534	1.5	3,184	1,917	687	746	18,606
- 당해년도 자산총액 5천억 이상	15,781	3.6	11,470	2,688	1,082	541	10,484
- 기업집단 분류 대기업	3,274	0.7	1,387	777	142	968	22,797
분류미상2)	206,076	47.0	144,605	30,461	27,281	3,728	457,679

주 1) 산업분류 NULL(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와 사업자등록번호 NULL

2) 분류미상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됨.

자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출자료와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분야별 중소기업 집행액을 살펴보면, 통신 분야는 전체 집행액에서 55.2%(2,076 억원)을 중소기업에 집행하였고, 다음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51.3%(7,250억원), 과학기술 49.9%(362억원), 문화 및 관광 49.6%(2조 5,94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8.7%(9,674억원), 환경 46.0%(2조 2,019억원) 분야 순이다. 교육은 중소기업에 전체 금액 대비 16.5%, 사회복지 11.8%를 중소기업에 집행하였는데, 교

육과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의료법인, 학교법인, 복지법인 등의 ‘회사이외법인’으로의 집행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표 Ⅲ-12〉 분야별 중소기업 유형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단위: 억원, 건, %)

분야명	합계 (A)	중소기업					중소기업 제외	분류 미상
		소계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금액(B)	비중 (B/A)					
전체	438,560	150,353	(34.3)	44,090	61,486	44,777	82,131	206,076
일반·지방행정	10,366	3,495	(33.7)	1,023	1,631	841	2,065	4,806
공공질서 및 안전	14,126	7,250	(51.3)	1,877	3,924	1,449	2,236	4,641
통일·외교	522	151	(28.9)	41	56	55	200	171
국방	417	171	(41.0)	37	79	55	92	154
교육	2,247	370	(16.5)	70	134	166	303	1,574
문화및관광	52,317	25,941	(49.6)	6,608	10,886	8,446	12,648	13,728
환경	47,855	22,019	(46.0)	8,960	7,572	5,487	3,491	22,345
사회복지	106,458	12,519	(11.8)	2,810	4,254	5,454	26,354	67,585
보건	10,749	4,755	(44.2)	1,709	1,114	1,932	2,741	3,254
농림수산	88,127	37,172	(42.2)	7,088	17,251	12,833	14,060	36,895
산업·중소 기업및에너지	39,995	13,154	(32.9)	4,042	4,919	4,193	5,862	20,980
교통및물류	41,049	11,247	(27.4)	5,777	3,960	1,511	8,528	21,274
통신	3,758	2,076	(55.2)	679	1,118	278	593	1,089
국토및지역개발	19,851	9,674	(48.7)	3,274	4,504	1,895	2,767	7,410
과학기술	724	362	(49.9)	94	84	183	192	170

자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출자료와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매출규모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 집행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은 매출이 10억 초과~50억원 이하 규모를 가진 거래처에 가장 많이 (27.8%) 집행되었으며, 10억~10,000억 초과의 매출규모인 거래처에서의 집행액이 전체의 75.5%를 차지한다. 거래처 집행건 수는 대체로 매출규모가 10억원 이하의 거래처에서 55% 이상이 집행되었다.

〈표 III-13〉 매출규모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단위: 원, 건, %)

구분	집행액						거래처 집행건수
	합계		국비	광역	기초	자부담	
	금액	비중					
전체	438,560	100.0	286,831	68,747	70,411	12,570	1,870,080
100만 이하	2,279	0.5	1,497	357	402	22	7,743
1,000만 이하	2,369	0.5	1,591	328	399	51	25,081
5,000만 이하	7,442	1.7	4,589	1,121	1,356	376	111,009
1억 이하	7,348	1.7	4,494	1,272	1,389	193	114,053
5억 이하	41,793	9.5	25,696	6,361	8,165	1,570	510,005
10억 이하	35,004	8.0	22,810	4,809	6,548	837	266,246
50억 이하	121,729	27.8	79,681	18,186	21,265	2,597	390,581
100억 이하	47,113	10.7	31,019	6,181	8,661	1,252	123,204
200억 이하	72,453	16.5	46,572	13,652	10,494	1,734	77,241
1000억 이하	63,323	14.4	44,453	9,750	7,754	1,366	112,394
5000억 이하	20,942	4.8	14,654	3,777	1,732	778	58,230
10,000억 이하	1,033	0.2	548	272	58	155	2,348
10,000억 초과	5,009	1.1	2,331	966	433	1,279	4,898
분류미상	10,723	2.4	6,896	1,712	1,755	360	67,047

자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출자료와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매출규모가 적은 100만원 이하 거래처에 집행액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31.7%)이며, 10억원 이하와 50억원 이하 매출규모의 거래처에 집행 비중이 높은 분야는 농림수산분야이며, 200억원 이하와 5000억원 이하는 사회복지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것으로 분석된다. 1조원 정도의 매출 규모를 가진 거래처에 집행액 규모가 큰 분야는 교통 및 물류, 환경분야이다.

〈표 III -14〉 분야별 매출규모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단위: 원, %)

분야명	매출액 규모							
	합계	100만 이하	1,000만 이하	5,000만 이하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50억 이하
전체	438,560	2,279	2,369	7,442	7,348	41,793	35,004	121,729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반·지방행정	10,366	31	27	245	708	1,600	967	2,863
(비중)	(2.4)	(1.4)	(1.1)	(3.3)	(9.6)	(3.8)	(2.8)	(2.4)
공공질서 및 안전	14,126	13	24	609	79	2,116	1,415	4,876
(비중)	(3.2)	(0.6)	(1.0)	(8.2)	(1.1)	(5.1)	(4.0)	(4.0)
통일·외교	522	1	1	23	39	96	26	99
(비중)	(0.1)	(0.1)	(0.0)	(0.3)	(0.5)	(0.2)	(0.1)	(0.1)
국방	417	0	0	1	1	92	19	81
(비중)	(0.1)	(0.0)	(0.0)	(0.0)	(0.0)	(0.2)	(0.1)	(0.1)
교육	2,247	3	26	29	79	288	191	401
(비중)	(0.5)	(0.1)	(1.1)	(0.4)	(1.1)	(0.7)	(0.5)	(0.3)
문화및관광	52,317	306	485	1,329	1,401	6,372	4,833	15,230
(비중)	(11.9)	(13.4)	(20.5)	(17.9)	(19.1)	(15.2)	(13.8)	(12.5)
환경	47,855	186	24	254	289	2,901	3,808	17,008
(비중)	(10.9)	(8.2)	(1.0)	(3.4)	(3.9)	(6.9)	(10.9)	(14.0)
사회복지	106,458	552	1,037	2,977	2,261	11,433	4,805	18,974
(비중)	(24.3)	(24.2)	(43.8)	(40.0)	(30.8)	(27.4)	(13.7)	(15.6)
보건	10,749	13	34	112	174	1,181	949	2,788
(비중)	(2.5)	(0.6)	(1.4)	(1.5)	(2.4)	(2.8)	(2.7)	(2.3)
농림수산	88,127	317	192	1,059	1,367	9,047	8,678	29,556
(비중)	(20.1)	(13.9)	(8.1)	(14.2)	(18.6)	(21.6)	(24.8)	(24.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9,995	721	134	422	408	2,777	5,059	10,909
(비중)	(9.1)	(31.7)	(5.7)	(5.7)	(5.6)	(6.6)	(14.5)	(9.0)
교통및물류	41,049	108	298	150	144	1,850	2,445	10,670
(비중)	(9.4)	(4.7)	(12.6)	(2.0)	(2.0)	(4.4)	(7.0)	(8.8)
통신	3,758	4	6	31	37	347	331	1,167
(비중)	(0.9)	(0.2)	(0.2)	(0.4)	(0.5)	(0.8)	(0.9)	(1.0)
국토및지역개발	19,851	23	80	198	353	1,645	1,410	6,831
(비중)	(4.5)	(1.0)	(3.4)	(2.7)	(4.8)	(3.9)	(4.0)	(5.6)
과학기술	724	0	2	3	10	47	67	277
(비중)	(0.2)	(0.0)	(0.1)	(0.0)	(0.1)	(0.1)	(0.2)	(0.2)

주) 파란색 네모박스는 매출액 규모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를 표시함

자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출자료와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표 Ⅲ-15〉 분야별 매출규모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계속)

(단위: 원, %)

분야명	매출액 규모						
	100억 이하	200억 이하	1,000억 이하	5,000억 이하	1조 이하	1조 초과	분류미상
전체	47,113	72,453	63,323	20,942	1,033	5,009	10,723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반·지방행정	973	752	583	126	1	8	1,483
(비중)	(2.1)	(1.0)	(0.9)	(0.6)	(0.1)	(0.2)	(13.8)
공공질서및안전	2,035	1,200	1,008	466	7	59	219
(비중)	(4.3)	(1.7)	(1.6)	(2.2)	(0.7)	(1.2)	(2.0)
통일·외교	37	23	45	33	4	1	95
(비중)	(0.1)	(0.0)	(0.1)	(0.2)	(0.4)	(0.0)	(0.9)
국방	87	38	61	34	1	-	3
(비중)	(0.2)	(0.1)	(0.1)	(0.2)	(0.1)	(-)	(0.0)
교육	824	73	181	95	9	-	47
(비중)	(1.7)	(0.1)	(0.3)	(0.5)	(0.8)	(-)	(0.4)
문화및관광	6,162	4,678	7,859	2,141	68	46	1,409
(비중)	(13.1)	(6.5)	(12.4)	(10.2)	(6.6)	(0.9)	(13.1)
환경	5,553	6,982	9,078	539	246	458	528
(비중)	(11.8)	(9.6)	(14.3)	(2.6)	(23.8)	(9.2)	(4.9)
사회복지	4,220	38,318	11,905	5,352	115	1,341	3,168
(비중)	(9.0)	(52.9)	(18.8)	(25.6)	(11.1)	(26.8)	(29.5)
보건	1,076	1,002	1,995	934	58	245	188
(비중)	(2.3)	(1.4)	(3.2)	(4.5)	(5.6)	(4.9)	(1.8)
농림수산	9,713	9,253	13,437	4,056	66	124	1,263
(비중)	(20.6)	(12.8)	(21.2)	(19.4)	(6.4)	(2.5)	(11.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526	3,047	6,901	2,175	26	152	737
(비중)	(13.9)	(4.2)	(10.9)	(10.4)	(2.5)	(3.0)	(6.9)
교통및물류	6,322	4,697	7,076	3,631	383	1,917	1,359
(비중)	(13.4)	(6.5)	(11.2)	(17.3)	(37.1)	(38.3)	(12.7)
통신	501	389	651	223	12	11	49
(비중)	(1.1)	(0.5)	(1.0)	(1.1)	(1.1)	(0.2)	(0.5)
국토및지역개발	2,996	1,903	2,490	1,067	36	648	170
(비중)	(6.4)	(2.6)	(3.9)	(5.1)	(3.5)	(12.9)	(1.6)
과학기술	90	97	52	71	1	0	7
(비중)	(0.2)	(0.1)	(0.1)	(0.3)	(0.1)	(0.0)	(0.1)

주) 파란색 네모박스는 매출액 규모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를 표시함

자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출자료와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시도 전체 중 24.9%가 서울에서 집행되었고, 다음은 경기도 12.0%, 강원도 7.7%, 전라남도과 경상남도가 각 6.4%이다.

〈표 Ⅲ-16〉 시도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계속)

(단위: 억원, 건, %)

구분	집행액						거래처 집행건수
	합계		국비	광역	기초	자부담	
	금액	비중					
전체	438,560	100.0	286,831	68,747	70,411	12,570	1,870,080
서울특별시	109,139	24.9	70,351	24,728	11,516	2,544	391,711
부산광역시	17,202	3.9	10,784	4,273	1,149	995	97,352
대구광역시	13,990	3.2	8,532	2,934	2,156	368	73,600
인천광역시	10,905	2.5	6,562	2,222	1,423	699	63,585
광주광역시	15,430	3.5	10,054	2,639	2,489	248	75,453
대전광역시	20,216	4.6	16,539	2,147	1,298	233	73,592
울산광역시	5,648	1.3	2,880	1,382	769	617	39,582
세종특별자치시	9,602	2.2	8,955	468	118	62	13,725
경기도	52,441	12.0	34,273	6,888	9,907	1,373	283,804
강원도	33,823	7.7	23,061	3,140	7,099	523	105,616
충청북도	14,999	3.4	9,388	2,034	3,359	218	69,272
충청남도	20,669	4.7	12,624	2,449	5,262	333	81,161
전라북도	23,768	5.4	15,337	2,202	5,915	313	113,655
전라남도	27,960	6.4	17,936	2,170	6,307	1,548	107,184
경상북도	27,873	6.4	18,567	2,596	5,501	1,208	114,290
경상남도	24,841	5.7	15,160	2,641	6,022	1,017	120,851
제주특별자치도	10,039	2.3	5,823	3,828	116	271	45,145
분류미상	14	0.0	4	7	3	0	502

자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출자료와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시도별 집행액을 분야별로 분석하면, 각기 다른 분야에 관심을 두고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은 전체 집행액 중 52.9%를 사회복지 분야에, 광주(20.4%)와 세종(66.6%) 역시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졌다. 환경 분야에 집행액 비중이 높은 시도는 인천(20.7%), 경기도

(19.4%), 강원도(20.5%) 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부산(29.6%), 울산(20.6) 이 집행액 비중이 높다. 대구, 대전을 비롯하여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모두 농림수산 분야의 집행액이 타 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Ⅲ-17〉 분야별 시도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단위: 억원, %)

분야명	시도별								
	전체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전체	438,560	109,139	17,202	13,990	10,905	15,430	20,216	5,648	9,602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반·지방행정	10,366	2,054	215	331	256	508	285	30	1,344
(비중)	(2.4)	(1.9)	(1.3)	(2.4)	(2.3)	(3.3)	(1.4)	(0.5)	(14.0)
공공질서 및 안전	14,126	1,444	350	814	283	728	283	339	138
(비중)	(3.2)	(1.3)	(2.0)	(5.8)	(2.6)	(4.7)	(1.4)	(6.0)	(1.4)
통일·외교	522	199	75	4	8	7	8	7	1
(비중)	(0.1)	(0.2)	(0.4)	(0.0)	(0.1)	(0.0)	(0.0)	(0.1)	(0.0)
국방	417	138	1	5	11	13	14	0	1
(비중)	(0.1)	(0.1)	(0.0)	(0.0)	(0.1)	(0.1)	(0.1)	(0.0)	(0.0)
교육	2,247	574	96	870	52	30	58	3	39
(비중)	(0.5)	(0.5)	(0.6)	(6.2)	(0.5)	(0.2)	(0.3)	(0.1)	(0.4)
문화및관광	52,317	15,761	2,443	1,836	977	2,953	3,331	468	146
(비중)	(11.9)	(14.4)	(14.2)	(13.1)	(9.0)	(19.1)	(16.5)	(8.3)	(1.5)
환경	47,855	4,980	1,411	1,596	2,262	1,477	1,197	824	108
(비중)	(10.9)	(4.6)	(8.2)	(11.4)	(20.7)	(9.6)	(5.9)	(14.6)	(1.1)
사회복지	106,458	57,753	2,588	1,805	1,626	3,150	1,337	773	6,394
(비중)	(24.3)	(52.9)	(15.0)	(12.9)	(14.9)	(20.4)	(6.6)	(13.7)	(66.6)
보건	10,749	2,080	614	510	577	345	560	149	59
(비중)	(2.5)	(1.9)	(3.6)	(3.6)	(5.3)	(2.2)	(2.8)	(2.6)	(0.6)
농림수산	88,127	4,859	1,810	2,540	1,081	2,741	6,970	868	688
(비중)	(20.1)	(4.5)	(10.5)	(18.2)	(9.9)	(17.8)	(34.5)	(15.4)	(7.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9,995	6,287	1,294	1,255	1,098	829	4,740	457	222
(비중)	(9.1)	(5.8)	(7.5)	(9.0)	(10.1)	(5.4)	(23.4)	(8.1)	(2.3)
교통 및 물류	41,049	9,250	5,100	931	2,163	1,301	569	1,164	247
(비중)	(9.4)	(8.5)	(29.6)	(6.7)	(19.8)	(8.4)	(2.8)	(20.6)	(2.6)

분야명	시도별								
	전체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통신	3,758	1,946	219	70	68	55	228	27	33
(비중)	(0.9)	(1.8)	(1.3)	(0.5)	(0.6)	(0.4)	(1.1)	(0.5)	(0.3)
국토 및 지역개발	19,851	1,624	898	1,315	436	1,210	571	531	179
(비중)	(4.5)	(1.5)	(5.2)	(9.4)	(4.0)	(7.8)	(2.8)	(9.4)	(1.9)
과학기술	724	191	86	108	9	84	66	6	2
(비중)	(0.2)	(0.2)	(0.5)	(0.8)	(0.1)	(0.5)	(0.3)	(0.1)	(0.0)

주) 파란색 네모박스는 시도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를 표시함

자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출자료와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표 Ⅲ-18〉 분야별 시도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계속)

(단위: 억원, %)

분야명	시도별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별 자치도	분류 미상
전체	52,441	33,823	14,999	20,669	23,768	27,960	27,873	24,841	10,039	14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반·지방행정	1,116	1,257	332	128	773	287	265	401	781	0
(비중)	(2.1)	(3.7)	(2.2)	(0.6)	(3.3)	(1.0)	(0.9)	(1.6)	(7.8)	(0.0)
공공질서 및 안전	1,300	1,135	860	685	1,161	897	2,301	1,181	227	0
(비중)	(2.5)	(3.4)	(5.7)	(3.3)	(4.9)	(3.2)	(8.3)	(4.8)	(2.3)	(0.3)
통일·외교	90	22	5	11	6	7	8	20	43	0
(비중)	(0.2)	(0.1)	(0.0)	(0.1)	(0.0)	(0.0)	(0.0)	(0.1)	(0.4)	(0.0)
국방	106	103	1	1	1	0	20	1	0	-
(비중)	(0.2)	(0.3)	(0.0)	(0.0)	(0.0)	(0.0)	(0.1)	(0.0)	(0.0)	(-)
교육	207	37	55	61	50	18	69	22	7	0
(비중)	(0.4)	(0.1)	(0.4)	(0.3)	(0.2)	(0.1)	(0.2)	(0.1)	(0.1)	(0.1)
문화 및 관광	6,429	2,219	1,747	2,026	2,583	2,478	3,551	2,149	1,218	3
(비중)	(12.3)	(6.6)	(11.6)	(9.8)	(10.9)	(8.9)	(12.7)	(8.7)	(12.1)	(17.9)
환경	10,177	6,937	1,986	4,240	2,633	2,040	2,140	2,938	906	2
(비중)	(19.4)	(20.5)	(13.2)	(20.5)	(11.1)	(7.3)	(7.7)	(11.8)	(9.0)	(14.9)
사회복지	9,528	4,021	1,599	2,411	3,127	2,663	2,963	3,105	1,612	2
(비중)	(18.2)	(11.9)	(10.7)	(11.7)	(13.2)	(9.5)	(10.6)	(12.5)	(16.1)	(12.7)
보건	1,689	1,156	539	471	440	404	558	428	171	0
(비중)	(3.2)	(3.4)	(3.6)	(2.3)	(1.9)	(1.4)	(2.0)	(1.7)	(1.7)	(1.1)

분야명	시도별									분류 미상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별 자치도	
농림수산	6,940	5,943	4,628	6,569	8,748	14,323	8,068	8,229	3,122	1
(비중)	(13.2)	(17.6)	(30.9)	(31.8)	(36.8)	(51.2)	(28.9)	(33.1)	(31.1)	(7.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492	4,436	1,323	957	2,189	1,169	5,122	1,474	651	0
(비중)	(12.4)	(13.1)	(8.8)	(4.6)	(9.2)	(4.2)	(18.4)	(5.9)	(6.5)	(1.5)
교통 및 물류	4,821	5,221	685	1,495	679	2,278	1,310	2,834	996	6
(비중)	(9.2)	(15.4)	(4.6)	(7.2)	(2.9)	(8.1)	(4.7)	(11.4)	(9.9)	(41.7)
통신	658	82	161	14	32	27	80	19	38	0
(비중)	(1.3)	(0.2)	(1.1)	(0.1)	(0.1)	(0.1)	(0.3)	(0.1)	(0.4)	(0.2)
국토 및 지역개발	2,855	1,251	1,075	1,599	1,317	1,362	1,385	1,987	258	0
(비중)	(5.4)	(3.7)	(7.2)	(7.7)	(5.5)	(4.9)	(5.0)	(8.0)	(2.6)	(1.5)
과학기술	32	5	1	1	29	7	34	53	9	0
(비중)	(0.1)	(0.0)	(0.0)	(0.0)	(0.1)	(0.0)	(0.1)	(0.2)	(0.1)	(0.1)

주) 파란색 네모박스는 매출액 규모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를 표시함

자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출자료와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다. 산업별 재정집행 현황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체를 분류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이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에 의한 통계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을 위하여 활동 분류 및 범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 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통계청).

사업체 단위는 공장, 광산, 상점, 사무소 등과 같이 산업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양면에서 가장 동질성이 있는 통계단위이다. 이 사업체 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

소에서 단일 산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영업잉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고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고 있는 단위이므로 장소의 동질성과 산업활동의 동질성이 요구되는 생산통계 작성에 가장 적합한 통계단위라고 할 수 있다(통계청). 분류구조는 대분류(알파벳 문자사용),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산업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의 집행액을 살펴보면, 건설업에 8.6조원(19.7%)으로 가장 많이 집행되었고, 다음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6.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6%), 제조업(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규모와 달리, 거래처 집행건 수는 도매 및 소매업이 464,238건(2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337,017건(18.0%)이었다.

〈표 III-19〉 산업별(대분류)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단위: 억원, 건, %)

구분		집행액						거래처 집행건수
		합계		국비	광역	기초	자부담	
		금액	비중					
전체		438,560	100.0	286,831	68,747	70,411	12,570	1,870,080
A	농업, 임업 및 어업	24,766	5.6	18,688	1,838	4,160	80	16,494
B	광업	536	0.1	384	78	74	0	637
C	제조업	28,948	6.6	15,540	4,329	5,680	3,399	161,259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024	1.6	6,442	192	280	110	5,818
E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136	2.3	5,770	1,137	3,224	6	11,190
F	건설업	86,274	19.7	50,134	15,929	18,165	2,046	73,334
G	도매 및 소매업	23,160	5.3	14,070	3,844	4,167	1,081	464,238
H	운수업	20,434	4.7	14,699	3,284	1,686	766	95,756
I	숙박 및 음식점업	2,673	0.6	1,978	333	292	69	337,017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704	2.9	9,958	805	792	1,149	81,057
K	금융 및 보험업	19,356	4.4	14,603	2,019	2,473	261	57,122

구분		집행액						거래처 집행건수
		합계		국비	광역	기초	자부담	
		금액	비중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303	4.2	9,505	5,885	2,174	738	23,457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425	9.2	27,259	4,842	6,921	1,403	127,111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425	2.1	6,497	1,275	1,361	292	65,74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0,064	16.0	50,207	10,715	9,097	45	39,097
P	교육서비스업	7,444	1.7	5,136	749	1,198	361	61,509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800	6.6	16,586	7,600	4,556	57	130,395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64	2.3	6,405	1,765	1,717	177	56,20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706	3.8	11,707	2,090	2,380	529	61,420
T / U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1	0.0	0	0	0	-	12
9	분류미상	1,317	0.3	1,263	38	14	2	1,211

자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출자료와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의 19.7%를 차지하는 ‘건설업’의 경우, 농림수산 분야(2.0조원), 환경 분야(1.3조원), 문화 및 관광 분야(1.2조원), 교통 및 물류 분야(1.2조원)에서의 집행이 많았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은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집행(4.5조원)이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 이외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조원), 부동산업 및 임대업(0.8조원), 건설업(0.5조원), 금융 및 보험업(0.4조원) 등 산업에서 집행되었다. 대체로 교육 분야는 교육서비스업에서, 국방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농림수산은 농업, 임업 및 어업산업, 통신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주로 관련 산업에서 직접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 -20〉 분야별 산업별(대분류)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단위: 억원, 건, %)

대분류	분야명							
	합계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및안전	통일· 외교	국방	교육	문화및 관광	환경
전체	438,560	10,366	14,126	522	417	2,247	52,317	47,855
농업, 임업 및 어업	24,766	116	175	0	-	1	184	128
광업	536	11	60	0	-	-	5	75
제조업	28,948	500	802	21	20	90	3,031	6,75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024	62	70	1	3	0	327	165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136	117	315	3	2	0	504	6,841
건설업	86,274	2,345	5,926	49	64	42	12,302	12,753
도매 및 소매업	23,160	267	378	41	12	60	2,526	4,434
운수업	20,434	271	74	6	2	38	495	2,023
숙박 및 음식업	2,673	42	91	29	10	86	621	10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704	336	87	36	9	111	5,053	91
금융 및 보험업	19,356	268	350	8	2	22	933	3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303	812	568	6	13	6	1,686	70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425	593	2,042	30	98	196	6,014	8,15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425	165	138	16	73	76	2,669	98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0,064	369	1,214	83	2	10	4,417	2,440
교육서비스업	7,444	463	66	17	45	653	1,127	1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8,800	915	891	45	0	25	294	18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64	443	72	8	54	8	6,049	65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706	1,078	808	125	8	813	4,032	949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	-	-	-	-	-	0	-
국제 및 외국기관	0	-	-	-	-	-	0	-
미분류	1,317	1,192	0	0	-	9	47	3

자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출자료와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표 III -21〉 분야별 산업별(대분류)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계속)

(단위: 억원, 건, %)

대분류	분야명							
	사회 복지	보건	농림 수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 기술
전체	106,458	10,749	88,127	39,995	41,049	3,758	19,851	724
농업, 임업 및 어업	195	4	23,428	77	100	1	357	-
광업	2	0	46	166	122	-	48	1
제조업	2,519	548	5,914	4,317	3,297	161	932	3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5	4	574	5,623	83	1	65	1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62	31	720	101	318	1	1,020	0
건설업	5,565	1,050	19,899	6,142	12,034	36	7,840	227
도매 및 소매업	2,532	3,020	6,417	1,902	907	207	443	14
운수업	474	242	767	194	15,250	37	556	4
숙박 및 음식업	793	74	282	243	176	32	67	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19	121	1,301	1,310	555	2,098	322	56
금융 및 보험업	4,234	546	9,590	1,696	957	19	430	2
부동산업 및 임대업	8,367	433	670	860	1,923	93	2,032	1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07	923	9,660	5,436	2,045	477	2,472	8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606	150	1,426	1,261	349	247	242	2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5,561	588	3,540	8,199	1,816	66	1,706	55
교육서비스업	2,882	95	786	734	247	110	102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927	2,593	144	127	154	71	423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00	114	827	162	95	6	364	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939	213	2,117	1,438	621	95	421	5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	0	-	-	-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	-
미분류	29	3	17	9	0	0	7	0

자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출자료와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3. 분석방법

가. 산업연관분석 의의⁷⁾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예산, 특히 보편적 공익증진사업 지출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의 효과는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사업의 ‘편익’을 의미하게 되고, 정부지출의 효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복지비 지출 중 노인복지관을 건립 및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들인 노인뿐만 아니라 부양하는 가족들이 갖게 되는 이익 즉, 잉여의 증가분이 ‘편익’이 되는 것이며, 정부지출의 효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지출에 의해서 국민은 이용의 편익이 증가하게 되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정부지출은 사회복지 관련 산업에 직접적으로 생산을 유발시키고 고용을 유발시키는 효과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타 산업에도 생산 및 일자리 창출 등 연속적으로 유발시키게 되는 파급효과를 지니게 되는데(김운재, 2011; 국회예산정책처(2012)에서 재인용), 여기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의 영향을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부문의 거시적인 상호관계를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시도하였다.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이다. 이러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 또는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이라 한다(한국은행, 2019).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생산, 고용, 소득 등 각종의 파급효과를 산업부문 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수립, 정책효과의 측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7) 본 장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15년 산업연관표(2019) 해설집을 참고하여 작성함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동안 일정 지역내에서 각 산업의 생산활동을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으로 파악하여, 각 산업의 투입구성과 산출구성을 한 장의 표로 읽을 수 있도록 행렬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작성할 때는 대상이 되는 기간(통상 1년)을 설정하고, 국내경제를 어떤 산업부문으로 분할할 것인가를 확정해야 한다(Masahiro Ide, 2003). 이러한 산업연관표 작성은 한국은행에서 담당하며 5년 간격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산업연관표의 시의성 확보와 경제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질조사를 간소화하여 매년 연장표를 작성하고 있다(한국은행, 2012).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은 2021년에 발표된 2019년 연장표이다.

산업연관분석은 비록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에 의한 단순한 분석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며, 재화의 산업간 순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는데 유리하다. 둘째, 거시 및 미시분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 투자, 수출 등의 변화에 따른 부문별 생산, 고용, 수입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경제계획의 수립 및 예측 또는 산업구조정책의 방향 설정 등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산업연관분석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변동이 각 부문의 생산 및 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실시에 따른 생산, 고용, 수입, 물가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정에 유리하다. 즉 산업연관분석의 원리를 이용하면 특정 산업 부문의 수요, 공급 혹은 가격의 변화가 타 산업 혹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분석할 수 있다. 넷째, 임금, 이윤 등 부가가치 변동에 따른 산업부문별 가격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특정 부문의 가격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정을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2).

반면 산업연관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각 생산물은 하나의 전문산업부문에 의해서만 생산된다”는 산업연관분석의 기본 가정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한 산업은 하나의 상품만을 만든다.”는 산업연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도록 산업부문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자료수집에 있어서 현장조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 인력,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한국은행에서는 5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도 조사결과가 2022년도에 발표되는 등 조사시점과 발표시점의 시차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연관분석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종수요 1단위 투입 시, 이를 충족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각 상품별 생산에 따른 파급 기대효과를 추정 계수값으로 실제값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 산업연관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최종 수혜자인 거래처 집행액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아래의 식을 바탕으로 도출한다. <식-1>의 투입계수, 산출승수, 소득승수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 등 다양한 산업유발 승수를 투입금액에 적용하여 실증적 파급효과를 도출한다.

$$A^d X + Y^d = X \dots\dots\dots \langle \text{식-1} \rangle$$

X = 총산출벡터, A^d = 투입계수 행렬, Y^d = 최종수요 벡터

1)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한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출과정에서 역행렬 $(I - A^d)^{-1}$ 이라는 수학적 방법이 활용됨에 따라 ‘역행렬계수’라고도 한다. 생산유발계수 도출과정을 <식-1>을 X 로 풀어 산출하면 아래의 <식-4>와 같다.

$$A^d X + Y^d = X \dots\dots\dots \langle \text{식-1} \rangle$$

$$X - A^d X = Y^d \dots\dots\dots \langle \text{식-2} \rangle$$

$$(I - A^d)X = Y^d \dots\dots\dots \langle \text{식-3} \rangle$$

$$X = (I - A^d)^{-1} Y^d \dots\dots\dots \langle \text{식-4} \rangle$$

〈식-4〉의 $(I - A^d)$ 를 레온티에프 행렬이라고 하며, I 는 단위행렬, $(I - A^d)^{-1}$ 이 생산유발계수행렬이라 한다.⁸⁾ 최종수요로부터 파생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승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케인즈의 투자승수와 구별하여 다부문 승수(multi-sector multiplier)라고도 한다. 2019년 기준, 도출된 생산유발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 Ⅲ-22〉 2019년 생산유발계수

상품		생산유발계수		
		전체	직접	간접
A	농림수산물	1.887	1.118	0.769
B	광산물	1.933	1.001	0.931
C01	음식료품	2.199	1.190	1.009
C02	섬유 및 가죽제품	1.864	1.154	0.710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2.044	1.268	0.776
C04	석탄 및 석유제품	1.259	1.027	0.232
C05	화학제품	1.892	1.270	0.622
C06	비금속광물제품	2.132	1.130	1.002
C07	1차 금속제품	1.879	1.264	0.615
C08	금속가공제품	2.093	1.160	0.934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552	1.188	0.365
C10	전기장비	2.064	1.194	0.870
C11	기계 및 장비	2.067	1.140	0.928
C12	운송장비	2.396	1.343	1.053
C13	기타 제조업 제품	2.125	1.032	1.094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1.829	1.083	0.746
D	전력, 가스 및 증기	1.536	1.176	0.360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1.760	1.037	0.723
F	건설	2.000	1.002	0.997

8) 생산유발계수는 수입의 취급방법에 따라 여러 유형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부지출(국고보조금)에 대한 분석이므로 수입과 국내 생산활동간에 아무런 함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음.

상품		생산유발계수		
		전체	직접	간접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754	1.063	0.691
H	운송서비스	1.768	1.086	0.682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160	1.028	1.132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624	1.128	0.496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642	1.183	0.459
L	부동산서비스	1.440	1.044	0.395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1.811	1.072	0.739
N	사업지원서비스	1.522	1.090	0.432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364	1.000	0.364
P	교육서비스	1.500	1.001	0.499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1.748	1.006	0.741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767	1.037	0.730
S	기타 서비스	1.996	1.009	0.987
T	기타	2.560	1.019	1.542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https://ecos.bok.or.kr/>)

2019년 기준, 운송장비의 생산유발계수는 2.396이며, 이는 운송장비 최종수요 100원이 증가했을 때, 전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239원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생산유발계수가 큰 부문에는 음식료품 2.199,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160, 비금속광물제품 2.132, 기타 제조업 제품 2.125, 금속가공제품 2.093 등 대체로 제조업 상품의 생산유발계수값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2) 부가가치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품목 부문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나타낸다. 이때 부가가치율을 $\hat{A}^v$ 라고 하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산업별 부가가치율에 생산유발액의 곱을 통해 산출하며, 산출과정은 <식-5>에 <식-4>를 대입하여 산출한다. <식-6>의 $\hat{A}^v(I-A^d)^{-1}$ 가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의미한다.

$$\hat{A}^v X = V \dots\dots\dots \langle \text{식-5} \rangle$$

$$\hat{A}^v (I - A^d)^{-1} Y^d = V \dots\dots\dots \langle \text{식-6} \rangle$$

2019년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다음과 같다. 생산과 연계된 부가가치 창출이 가장 높은 산업은 부동산서비스(0.959)이며, 다음으로 교육서비스 0.926, 금융 및 보험서비스 0.92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922 순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일수록 같은 생산수준일 때 더 많은 가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의미한다.

〈표 Ⅲ-23〉 2019년 부가가치유발계수

상품		부가가치 유발계수	상품		부가가치 유발계수
A	농림수산물	0.849	D	전력, 가스 및 증기	0.466
B	광산물	0.855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0.870
C01	음식료품	0.757	F	건설	0.824
C02	섬유 및 가죽제품	0.543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0.876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0.730	H	운송서비스	0.658
C04	석탄 및 석유제품	0.352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824
C05	화학제품	0.600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859
C06	비금속광물제품	0.742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923
C07	1차 금속제품	0.494	L	부동산서비스	0.959
C08	금속가공제품	0.744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862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0.623	N	사업지원서비스	0.916
C10	전기장비	0.667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922
C11	기계 및 장비	0.698	P	교육서비스	0.926
C12	운송장비	0.683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0.837
C13	기타 제조업 제품	0.71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0.883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0.856	S	기타 서비스	0.831
			T	기타	0.855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https://ecos.bok.or.kr/>)

3)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노동유발계수는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을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어느 품목부문의 생산물 한단위(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 즉 노동계수뿐만 아니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노동유발계수는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산출되며, 노동계수가 고용계수인지 취업계수인지에 따라 피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 고용유발계수와 취업자(피용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수를 기준으로 한 취업유발계수로 구분된다(한국은행, 2015). 노동계수는 1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며, 노동계수식은 아래 <식-7>과 같다.

$$l = \frac{L}{X} \dots\dots\dots \text{〈식-7〉}$$

l = 노동계수, L = 투입노동량, X = 총 산출액

노동계수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유발계수를 대입하여 노동유발계수를 도출하고, 그 과정은 <식-7>을 <식-8>로 풀어 <식-4>를 대입한 산출결과인 <식-9>의 $\hat{l}(I - A^d)^{-1} Y^d$ 가 노동유발계수를 의미한다.

$$L = l \times X \dots\dots\dots \text{〈식-8〉}$$

$$L = \hat{l}(I - A^d)^{-1} Y^d \dots\dots\dots \text{〈식-9〉}$$

2019년 취업유발계수는 다음과 같다. 최종수요 1단위(10억원) 재정집행 시, 농림수산품이 26.082명으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타서비스 24.630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9.008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6.477명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적은 부문은 석탄 및 석유제품 1.280명, 전력, 가스 및 증기 2.425명이다.

〈표 III-24〉 2019년 취업유발계수

상품		취업 유발계수	상품		취업 유발계수
A	농림수산물	26.082	D	전력, 가스 및 증기	2.425
B	광산물	9.170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10.275
C01	음식료품	13.070	F	건설	11.093
C02	섬유 및 가죽제품	8.478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6.477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9.001	H	운송서비스	13.039
C04	석탄 및 석유제품	1.280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9.008
C05	화학제품	5.362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8.510
C06	비금속광물제품	8.185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7.220
C07	1차 금속제품	4.452	L	부동산서비스	4.981
C08	금속가공제품	7.88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11.059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3.565	N	사업지원서비스	15.247
C10	전기장비	6.532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9.276
C11	기계 및 장비	7.444	P	교육서비스	14.948
C12	운송장비	7.283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14.788
C13	기타 제조업 제품	11.895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4.464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12.367	S	기타 서비스	24.630
			T	기타	9.912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https://ecos.bok.or.kr/>)

비용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는 취업유발계수와는 달리, 고용유발계수는 비용자 수에 대한 유발계수이다. 최종수요 1단위(10억원) 재정집행 시, 고용유발계수가 가장 큰 부문은 기타서비스 14.961명, 사업지원서비스 13.471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2.937명, 교육서비스 11.397명이었다. 반면, 전 산업에 미치는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부문은 취업유발효과와 동일하게 석탄 및 석유제품(0.989명)과 전력, 가스 및 증기(2.039명) 이다.

〈표 III-25〉 2019년 고용유발계수

상품		고용 유발계수	상품		고용 유발계수
A	농림수산물	4.370	D	전력, 가스 및 증기	2.039
B	광산물	7.376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8.323
C01	음식료품	5.951	F	건설	8.707
C02	섬유 및 가죽제품	6.289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0.369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6.727	H	운송서비스	8.107
C04	석탄 및 석유제품	0.989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0.212
C05	화학제품	4.263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7.018
C06	비금속광물제품	6.244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6.237
C07	1차 금속제품	3.563	L	부동산서비스	3.559
C08	금속가공제품	6.35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9.118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929	N	사업지원서비스	13.471
C10	전기장비	5.33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8.686
C11	기계 및 장비	6.068	P	교육서비스	11.397
C12	운송장비	6.071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12.937
C13	기타 제조업 제품	8.47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9.222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10.647	S	기타 서비스	14.961
			T	기타	8.159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https://ecos.bok.or.kr/>)

다. 산업연관분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산업연관표는 2019년 연장표이며, 기업통계등록부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자료와 매칭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통계등록부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⁹⁾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1:1 매칭 작업이 필요하다. 대부분은 대분류 수준에서 매칭이 가능하

9)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엔(UN)이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통계청장이 작성한 통계목적의 분류임

지만, “C.제조업”은 산업연관표의 대분류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중분류¹⁰⁾를 활용하였다.

〈표 Ⅲ-26〉 한국산업표준분류-산업연관표 매칭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연관표	
대분류		중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A	농림수산물
B	광업(05~08)			B	광산물
C	제조업 (10~34)	10	식료품 제조업	C01	음식료품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02	섬유 및 가죽제품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04	석탄 및 석유제품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05	화학제품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06	비금속광물제품
		24	1차 금속 제조업	C07	1차 금속제품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08	금속가공제품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10	전기장비
		28	전기장비 제조업		

10) 중분류를 포함한 표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연관표	
대분류		중분류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11	기계 및 장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12	운송장비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C13	기타 제조업 제품
		33	기타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D	전력, 가스 및 증기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F	건설업(41~42)			F	건설
G	도매 및 소매업(45~47)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H	운수 및 창고업(49~52)			H	운송서비스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J	정보통신업(58~63)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K	금융 및 보험업(64~66)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L	부동산업(68)			L	부동산서비스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N	사업지원서비스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P	교육 서비스업(85)			P	교육서비스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S	기타 서비스
T/U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97~98)/ 국제 및 외국기관(99)			T	기타

자료: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산업연관분류에 따른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 집행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 집행액 전체 43.8조원 중, 건설 분야가 8.6조원(19.7%)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은 7.0조원(16.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4.0조원(9.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2.9조원(6.6%)으로 전체 34개 산업 중 50% 이상이 이들 4개 산업에 집중되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래처 집행건 수는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나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에서의 집행빈도가 잦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집행액에서 국비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석탄 및 석유제품, 전력, 가스 및 증기,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농림수산물,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등 75% 이상을 국비에서 집행되었고,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수리, 운송장비 등의 제조업은 50% 미만이었다. 광역자치단체의 집행 비중이 높은 산업은 부동산서비스가 32%로 높았고, 다음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수리 산업 등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집행 비중이 높은 산업은 비금속광물제품,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산업에서 30%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집행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자부담의 재정집행이 많았던 산업은 운송장비가 30%, 기계 및 장비 12%,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수리 10% 등이다.

〈표 III -27〉 산업연관분류에 따른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집행액

(단위: 억원, 건, %)

산업연관표		집행액						거래처 집행건수
		합계		국비	광역	기초	자부담	
		금액	비중					
	전체	438,560	100.0	286,831	68,747	70,411	12,570	1,870,080
A	농림수산물	24,766	5.6	18,688	1,838	4,160	80	16,494
B	광산물	536	0.1	384	78	74	0	637
C01	음식료품	1,996	0.5	1,253	239	401	103	18,200
C02	섬유 및 가죽제품	738	0.2	445	112	143	37	8,130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1,914	0.4	1,309	231	292	82	35,614
C04	석탄 및 석유제품	255	0.1	254	1	0	0	121
C05	화학제품	1,808	0.4	984	275	480	70	8,902
C06	비금속광물제품	1,723	0.4	950	212	551	11	6,590
C07	1차 금속제품	481	0.1	282	64	125	10	1,928

산업연관표		집행액						거래처 집행건수
		합계		국비	광역	기초	자부담	
		금액	비중					
C08	금속가공제품	2,477	0.6	1,279	384	702	112	9,179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167	0.3	687	177	251	52	5,922
C10	전기장비	3,518	0.8	2,092	447	767	213	13,115
C11	기계 및 장비	4,843	1.1	2,490	855	888	610	13,045
C12	운송장비	6,255	1.4	2,521	1,046	672	2,016	4,358
C13	기타 제조업 제품	1,379	0.3	801	211	323	44	33,921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393	0.1	193	75	85	41	2,234
D	전력, 가스 및 증기	7,024	1.6	6,442	192	280	110	5,818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10,136	2.3	5,770	1,137	3,224	6	11,190
F	건설	86,274	19.7	50,134	15,929	18,165	2,046	73,334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23,160	5.3	14,070	3,844	4,166	1,081	464,238
H	운송서비스	20,434	4.7	14,699	3,284	1,686	766	95,756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673	0.6	1,978	333	292	69	337,017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2,704	2.9	9,958	805	792	1,149	81,057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9,356	4.4	14,603	2,019	2,473	261	57,122
L	부동산서비스	18,303	4.2	9,505	5,885	2,174	738	23,457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40,425	9.2	27,259	4,842	6,921	1,403	127,111
N	사업지원서비스	9,425	2.1	6,497	1,275	1,361	292	65,74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0,064	16.0	50,207	10,715	9,097	45	39,097
P	교육서비스	7,444	1.7	5,136	749	1,198	361	61,509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28,800	6.6	16,586	7,600	4,556	57	130,395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0,064	2.3	6,405	1,765	1,717	177	56,201
S	기타 서비스	16,706	3.8	11,707	2,090	2,380	529	61,420
T	기타	1	0.0	0	0	0	-	12
9	분류미상	1,317	0.3	1,263	38	14	2	1,211

자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출자료와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IV. 분석 결과

1.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가. 생산유발효과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에 대한 재정집행이 전체 산업부문의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 즉,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거래처 집행액이 각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생산유발계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 43.8조원 재정집행 시, 약 76.7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추정되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의 생산유발계수는 운송장비가 2.396으로 가장 컸으며, 운송장비 0.6조원이 집행되어 1.5조원의 직·간접적인 유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거래처 집행액이 가장 크게 투입된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이며, 8.6조원 집행되어 17.2조원의 파급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체 생산유발효과 76.7조원의 22.5%를 차지하는 큰 규모이다. 다음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9.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6.6%), 농림수산물(6.1%) 순으로 생산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한 산업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다양한 산업에 파급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생산유발효과(전체)

(단위: 억원, %)

산업연관표		생산유발효과		산업연관표		생산유발효과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766,844	100.0	D 전력, 가스 및 증기		10,790	1.4
A	농림수산물	46,733	6.1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17,845	2.3
B	광산물	1,037	0.1	F 건설		172,509	22.5
C01	음식료품	4,390	0.6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40,621	5.3
C02	섬유 및 가죽제품	1,376	0.2	H 운송서비스		36,126	4.7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3,913	0.5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5,772	0.8
C04	석탄 및 석유제품	321	0.0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20,626	2.7
C05	화학제품	3,420	0.4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31,787	4.1
C06	비금속광물제품	3,673	0.5	L 부동산서비스		26,352	3.4
C07	1차 금속제품	904	0.1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73,214	9.5
C08	금속가공제품	5,186	0.7	N 사업지원서비스		14,343	1.9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812	0.2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95,565	12.5
C10	전기장비	7,261	0.9	P 교육서비스		11,166	1.5
C11	기계 및 장비	10,012	1.3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50,328	6.6
C12	운송장비	14,988	2.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7,784	2.3
C13	기타 제조업 제품	2,930	0.4	S 기타 서비스		33,340	4.3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719	0.1	T 기타		2	0.0

생산유발효과는 해당 산업에 직접적으로 생산을 유발시키는 효과 이외에도 간접적으로는 타 산업에게도 생산을 연속적으로 유발시키게 되는 파급효과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 재정지원의 경우, 교육서비스 산업 이외에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다.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은 2019년 76.7조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총 생산유발 효과 중에서 직접적인 효과는 46.2조원이며, 간접적인 효과는 30.5조원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석탄 및 석유제품의 전체 생산유발효과 321억원에서 직접 효과가 81.5%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전력, 가스 및 증기 76.6%,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76.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3.3%, 부동산서비스 72.5%로 직접 생산효과가 큰 산업들이다. 타 산업에 미친 간접 생산유발효과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52.4%)와 기타 제조업 제품(51.5%)이 각각의 해당사업에 미치는 영향보다 타 산업에서 생산유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2〉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생산유발효과(직접/간접)

(단위: 억원, %)

산업연관표		직접 효과		간접효과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461,797	60.2	305,047	39.8	766,844	100.0
A	농림수산물	27,690	59.3	19,044	40.7	46,733	100.0
B	광산물	537	51.8	500	48.2	1,037	100.0
C01	음식료품	2,376	54.1	2,014	45.9	4,390	100.0
C02	섬유 및 가죽제품	852	61.9	524	38.1	1,376	100.0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2,428	62.0	1,485	38.0	3,913	100.0
C04	석탄 및 석유제품	262	81.6	59	18.4	321	100.0
C05	화학제품	2,296	67.1	1,124	32.9	3,420	100.0
C06	비금속광물제품	1,947	53.0	1,727	47.0	3,673	100.0
C07	1차 금속제품	608	67.3	296	32.7	904	100.0
C08	금속가공제품	2,873	55.4	2,313	44.6	5,186	100.0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386	76.5	426	23.5	1,812	100.0
C10	전기장비	4,200	57.8	3,061	42.2	7,261	100.0
C11	기계 및 장비	5,520	55.1	4,492	44.9	10,012	100.0
C12	운송장비	8,402	56.1	6,587	43.9	14,988	100.0
C13	기타 제조업 제품	1,422	48.5	1,508	51.5	2,930	100.0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426	59.2	293	40.8	719	100.0
D	전력, 가스 및 증기	8,261	76.6	2,528	23.4	10,790	100.0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10,514	58.9	7,330	41.1	17,845	100.0

산업연관표		직접 효과		간접효과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F	건설	86,469	50.1	86,039	49.9	172,509	100.0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24,622	60.6	15,998	39.4	40,621	100.0
H	운송서비스	22,195	61.4	13,931	38.6	36,126	100.0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747	47.6	3,025	52.4	5,772	100.0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4,329	69.5	6,297	30.5	20,626	100.0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2,907	72.1	8,880	27.9	31,787	100.0
L	부동산서비스	19,117	72.5	7,235	27.5	26,352	100.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43,329	59.2	29,885	40.8	73,214	100.0
N	사업지원서비스	10,270	71.6	4,073	28.4	14,343	100.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0,092	73.3	25,473	26.7	95,565	100.0
P	교육서비스	7,449	66.7	3,717	33.3	11,166	100.0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28,978	57.6	21,350	42.4	50,328	10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0,437	58.7	7,347	41.3	17,784	100.0
S	기타 서비스	16,857	50.6	16,483	49.4	33,340	100.0
T	기타	1	39.8	1	60.2	2	100.0

나. 부가가치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일수록 같은 생산수준일 때 더 많은 가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의미한다. 한 국가의 부가가치 합은 국내총생산과 일치하게 되는데, 2019년 1년 동안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으로 집행한 43.8조원은 36.9조원의 부가가치 즉, 국내총생산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재정집행 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산업으로는 건설(19.3%), 공공행정 및 국방분야(17.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9.5%) 순이다. 산업별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의 크기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 공공행정 및 국방 및 사회보장,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등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에서 모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전체)

(단위: 억원, %)

산업연관표		부가가치유발효과		산업연관표		부가가치유발효과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합계		368,656	100.0	D	전력, 가스 및 증기	3,276	0.9
A	농림수산물	21,036	5.7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8,819	2.4
B	광산물	459	0.1	F	건설	71,058	19.3
C01	음식료품	1,511	0.4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20,286	5.5
C02	섬유 및 가죽제품	400	0.1	H	운송서비스	13,444	3.6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1,397	0.4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202	0.6
C04	석탄 및 석유제품	90	0.0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0,912	3.0
C05	화학제품	1,084	0.3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7,866	4.8
C06	비금속광물제품	1,279	0.3	L	부동산서비스	17,558	4.8
C07	1차 금속제품	238	0.1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34,848	9.5
C08	금속가공제품	1,844	0.5	N	사업지원서비스	8,633	2.3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727	0.2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64,591	17.5
C10	전기장비	2,346	0.6	P	교육서비스	6,892	1.9
C11	기계 및 장비	3,380	0.9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24,120	6.5
C12	운송장비	4,274	1.2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8,886	2.4
C13	기타 제조업 제품	978	0.3	S	기타 서비스	13,886	3.8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337	0.1	T	기타	1	0.0

다. 취업/고용 유발효과

정부 재정집행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산업 파급효과는 필연적으로 유관 산업의 생산과 노동수요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43.8조원 재정집행으로 발생한 취업유발효과는 취업자 532,723명이며, 고용유발효과는 374,553명이다. 취업유발효과는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며,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건설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

95,705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64,988명, 농림수산물 64,595명의 취업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임금근로자에 국한한 고용유발 효과에서 가장 큰 산업 역시 건설이었으며, 취업유발효과보다는 약 20,000명 적은 75,122명의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전체 고용유발효과의 20.1%를 차지한다.

〈표 IV-4〉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취업/고용 유발효과(전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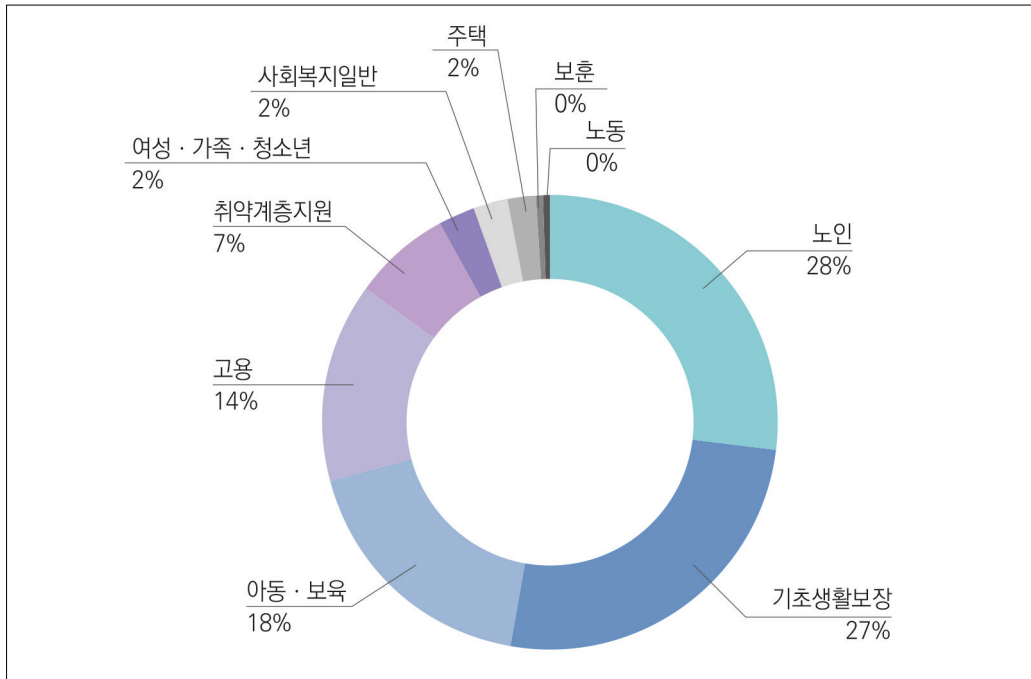
산업연관표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전체		532,723	100.0	374,553	100.0
A	농림수산물	64,595	12.1	10,823	2.9
B	광산물	492	0.1	396	0.1
C01	음식료품	2,609	0.5	1,188	0.3
C02	섬유 및 가죽제품	626	0.1	464	0.1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1,723	0.3	1,288	0.3
C04	석탄 및 석유제품	33	0.0	25	0.0
C05	화학제품	969	0.2	771	0.2
C06	비금속광물제품	1,410	0.3	1,076	0.3
C07	1차 금속제품	214	0.0	171	0.0
C08	금속가공제품	1,954	0.4	1,573	0.4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416	0.1	342	0.1
C10	전기장비	2,298	0.4	1,877	0.5
C11	기계 및 장비	3,605	0.7	2,939	0.8
C12	운송장비	4,555	0.9	3,797	1.0
C13	기타 제조업 제품	1,640	0.3	1,168	0.3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486	0.1	419	0.1
D	전력, 가스 및 증기	1,703	0.3	1,432	0.4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10,415	2.0	8,437	2.3
F	건설	95,705	18.0	75,122	20.1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38,160	7.2	24,014	6.4
H	운송서비스	26,645	5.0	16,565	4.4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5,080	1.0	2,729	0.7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0,811	2.0	8,916	2.4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3,975	2.6	12,072	3.2

산업연관표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L	부동산서비스	9,116	1.7	6,514	1.7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44,705	8.4	36,861	9.8
N	사업지원서비스	14,371	2.7	12,697	3.4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64,988	12.2	60,860	16.2
P	교육서비스	11,127	2.1	8,484	2.3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42,591	8.0	37,259	9.9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4,556	2.7	9,280	2.5
S	기타 서비스	41,148	7.7	24,994	6.7
T	기타	1	0.0	1	0.0

2. 사회복지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가. 일반 현황

재정 특성이 다른 여러 유형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경제적 혹은 행정적 관점에서 표준적으로 접근하면, 국고보조사업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분야는 타 분야와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장은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등 국민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분야인 사회복지분야의 부문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급여형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하였으므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산업 중심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림 IV-1] 사회복지분야의 부문별 예산 현황

주: 본예산 기준

자료: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회복지분야는 총 12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아동·보육,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고용, 고용·노동, 기초생활보장, 주택, 사회복지일반, 취약계층지원 등 2019년 사회복지분야의 부문별 국고보조금 비중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분야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인 부문으로 12.9조원(28.1%)이며, 기초생활보장으로 12.7조원(27.5%), 아동보육 8.1조원(17.6%), 고용 6.2조원(13.6%), 취약계층지원 3.1조원(6.8%), 여성·가족·청소년과 사회복지일반, 주택, 보훈, 노동은 1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 노인과 기초생활보장, 아동보육 부문이 사회복지분야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사회복지분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보조금 배분에서는 국가재정의 전반적인 여건에 따른 영향이 크며, 반대로 비중이 적은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은 소관부처의 정책적인 관점에 따른 재정 영향이 높을 수 있다.

〈표 IV-5〉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전체)의 예산액 현황(2019)

(단위: 억원, %)

부문	예산액	비중
사회복지분야 전체	460,972	100.0
노인	129,333	28.1
기초생활보장	126,973	27.5
아동·보육	81,072	17.6
고용	62,866	13.6
취약계층지원	31,553	6.8
여성·가족·청소년	9,379	2.0
사회복지일반	8,925	1.9
주택	7,661	1.7
보훈	2,131	0.5
노동	1,079	0.2

자료 :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자료추출 : 2021.11.기준)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대표 사업들은 노인 부문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 등이며, 기초생활보장에는 자활사업, 주거급여지원,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이 해당된다. 아동·보육에는 영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확충, 지역아동센터 지원, 고용에는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약계층지원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여성·가족·청소년에는 아동돌봄지원, 청소년시설확충, 청소년 사회안정망구축 등이 해당된다. 〈표 IV-6〉에 제시한 부문별 대표 사업은 모두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을 기준으로 추출한 자료 중 집행액 기준, 상위 5위에 드는 대표사업이다.

〈표 IV-6〉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대표 사업명

부문	대표 사업명
노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체계 구축, 노인단체 지원, 장사시설설치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주거급여지원,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긴급복지
아동·보육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확충, 지역아동센터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고용	전직실업자등 능력 개발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취약계층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여성·가족·청소년	아이돌봄지원, 청소년시설확충(지역자율),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회복지일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지공동모금회지원
주택	다가구매입임대출자, 국민임대출자, 행복주택출자, 영구임대출자,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보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지원,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수업료면제), 독립기념관운영및활성화, 보훈단체운영,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노동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노사발전재단지원

사회복지분야는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전체 집행액(43.8조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4.3%(10.6조원)이다. 사회복지분야 사업형과 급여형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예산액 기준으로는 노인 부문(12.9조원)에 대한 예산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12.7조원), 아동·보육(8.1조원), 고용(6.3조원) 순이다. 그러나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의 집행액 기준으로는 아동·보육(3.5조원)에 대한 집행액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택(1.4조원), 노인(1.4조원), 고용(1.1조원), 취약계층지원(1.1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7〉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거래처 집행액(2019)

(단위: 억원, 건, %)

구분	집행액						거래처 집행건수
	합계		국비	광역	기초	자부담	
	금액	비중					
사회복지분야	106,458	100.0	67,497	23,315	15,000	645	504,043
기초생활보장	4,611	4.3	3,782	443	379	7	9,130
취약계층지원	10,670	10.0	5,965	2,888	1,780	36	66,878
보훈	2,084	2.0	1,839	13	35	197	20,557
주택	14,372	13.5	7,796	6,165	384	26	2,764
사회복지일반	7,095	6.7	3,550	1,566	1,964	15	64,212
아동·보육	35,680	33.5	22,759	7,950	4,971	0	56,065
노인	13,827	13.0	7,368	2,638	3,818	4	101,962
여성·가족·청소년	6,974	6.6	4,119	1,344	1,506	5	115,882
고용	10,926	10.3	10,155	278	150	343	61,587
노동	218	0.2	163	29	14	13	5,006

전체 사회복지분야 집행액 10.6조원 중,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으로의 집행액이 4.6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집행액은 2.3조원이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집행이 사회복지분야 전체에서 64.4%를 차지한다. 아동·보육 부문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산업에 전체 중 86.4%를 집행했으며, 사회복지일반은 55.3%를 집행, 고용은 56.1%를 집행하였다. 주택 부문은 ‘부동산서비스’산업에 49.9%인 0.7조원을, 노인 부문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산업에 46.0%인 0.6조원을 집행하였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집행이 대부분 타 산업에서의 집행이 많지 않고, 50% 이상을 자기 관련 산업의 거래처에서 집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8〉 산업연관분류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집행액

(단위: 억원, %)

	사회 복지 전체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아동·보육	노인	여성 가족 청소년	고용	노동
전체	106,429	4,611	10,663	2,084	14,371	7,094	35,678	13,824	6,960	10,924	218
A	195	16	68	0	0	0	-	100	1	8	0
B	2	-	2	0	-	-	-	0	0	0	-
C01	487	5	223	3	126	7	0	57	33	34	1
C02	184	22	43	1	0	16	1	81	7	15	0
C03	293	8	93	18	3	24	11	72	22	38	4
C04	1	-	0	-	-	0	-	0	0	0	-
C05	194	0	83	1	19	9	3	50	9	19	1
C06	57	3	15	4	5	6	3	8	8	4	1
C07	30	5	14	0	-	0	0	3	5	3	1
C08	207	0	58	10	15	5	7	82	14	15	1
C09	170	0	49	34	1	6	14	30	23	12	1
C10	185	0	99	1	5	4	6	16	30	22	1
C11	328	0	81	2	11	3	3	197	15	16	1
C12	127	0	64	0	-	0	1	33	9	17	3
C13	226	1	61	6	4	17	31	52	22	30	2
C14	28	3	15	0	-	0	0	5	3	1	0
D	45	1	11	8	2	4	1	10	6	1	1
E	162	1	19	9	11	34	23	32	30	2	0
F	5,565	1,174	539	187	749	549	622	447	800	470	30
G	2,532	85	548	114	17	452	78	764	205	261	9
H	474	18	31	99	26	20	6	158	37	75	4
I	793	160	142	22	2	45	5	234	87	85	11
J	1,219	9	214	35	11	52	578	100	62	148	8
K	4,234	131	968	18	21	465	155	517	87	1,868	4
L	8,367	295	141	19	7,173	31	64	517	24	102	1
M	2,207	37	1,082	70	36	71	126	167	299	301	19
N	1,606	123	333	39	5	73	59	379	177	377	40
O	45,561	6	1,662	520	61	3,926	30,813	1,321	1,117	6,134	0
P	2,882	741	258	329	9	190	32	169	745	404	5
Q	22,927	1,541	3,102	22	5,740	599	2,603	6,363	2,762	192	3
R	1,200	9	203	112	84	131	391	108	129	32	1
S	3,939	217	443	397	236	355	42	1,754	190	237	66
T	1	-	0	-	-	0	0	-	0	0	-

주) A 농림수산물; B 광산물; C01 음식료품; C02 섬유 및 가죽제품;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C04 석탄 및 석유제품; C05 화학제품; C06 비금속광물제품; C07 1차 금속제품; C08 금속가공제품;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C10 전기장비; C11 기계 및 장비; C12 운송장비; C13 기타 제조업 제품;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D 전력, 가스 및 증기;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F 건설;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H 운송서비스;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L 부동산서비스;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N 사업지원서비스;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P 교육서비스;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S 기타 서비스; T 기타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생산유발효과

사회복지분야 총 10.6조원 재정집행 시, 총 16.8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직·간접적으로 유발되었다. 부문별 살펴보면, 노동 부문에 가장 적은 재정인 218억원이 집행되었으나, 404억원(1.85배)의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은 1.77배, 노인은 1.75배, 취약계층지원은 1.72배, 여성·가족·청소년은 1.70배 순이다. 가장 많은 금액이 집행된 아동·보육 부문은 생산유발효과가 1.42배로 가장 낮았으며, 3.6조원 집행 시, 5.1조원의 직·간접적인 생산유발효과가 있었다.

〈표 IV-9〉 사회복지분야 전 산업 생산유발효과

(단위: 억원, %)

구분	집행액(A)	유발효과(B)	차이(B-A)	집행액 대비 유발효과(B/A)
사회복지분야 전체	106,429	167,935	61,506	157.8
기초생활보장	4,611	8,170	3,558	177.2
취약계층지원	10,663	18,362	7,699	172.2
보훈	2,084	3,511	1,427	168.5
주택	14,371	23,202	8,831	161.5
사회복지일반	7,094	11,043	3,949	155.7
아동·보육	35,678	50,606	14,928	141.8
노인	13,824	24,173	10,349	174.9
여성·가족·청소년	6,960	11,851	4,890	170.3
고용	10,924	16,613	5,689	152.1
노동	218	404	186	185.3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총 집행액은 10.6조원이며, 이로 인해 약 16.8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추정되었다. 그중 직접적인 효과는 10.9조원이며, 간접적인 효과는 5.9조원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석탄 및 석유제품

이 81.6%로 가장 직접효과가 높은 산업인데, 이는 자기 산업 이외에 타 산업으로의 생산을 연속적으로 유발시키는 영향력이 매우 적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은 6.2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중 직접효과 4.6조원(73.3%), 간접효과 1.7조원(26.7%)이며, 다음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와 ‘부동산 서비스’ 산업 역시 직접효과가 각 57.6%, 72.5%로 간접효과보다 큰 산업에 속한다.

〈표 IV-10〉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생산유발효과(직접/간접)

(단위: 억원, %)

산업연관표		직접 효과		간접효과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109,017	64.9	58,918	35.1	167,935	100.0
A	농림수산물	217	59.3	150	40.7	367	100.0
B	광산물	2	51.8	2	48.2	4	100.0
C01	음식료품	580	54.1	492	45.9	1,072	100.0
C02	섬유 및 가죽제품	213	61.9	131	38.1	344	100.0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372	62.0	227	38.0	599	100.0
C04	석탄 및 석유제품	1	81.6	0	18.4	1	100.0
C05	화학제품	246	67.1	121	32.9	367	100.0
C06	비금속광물제품	65	53.0	57	47.0	122	100.0
C07	1차 금속제품	38	67.3	18	32.7	56	100.0
C08	금속가공제품	241	55.4	194	44.6	434	100.0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02	76.5	62	23.5	264	100.0
C10	전기장비	221	57.8	161	42.2	382	100.0
C11	기계 및 장비	374	55.1	305	44.9	679	100.0
C12	운송장비	171	56.1	134	43.9	305	100.0
C13	기타 제조업 제품	234	48.5	248	51.5	481	100.0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30	59.2	21	40.8	51	100.0
D	전력, 가스 및 증기	53	76.6	16	23.4	69	100.0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168	58.9	117	41.1	285	100.0
F	건설	5,578	50.1	5,550	49.9	11,128	100.0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2,692	60.6	1,749	39.4	4,441	100.0
H	운송서비스	515	61.4	323	38.6	838	100.0

산업연관표		직접 효과		간접효과		전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815	47.6	897	52.4	1,712	100.0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375	69.5	604	30.5	1,979	100.0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5,011	72.1	1,942	27.9	6,953	100.0
L	부동산서비스	8,739	72.5	3,308	27.5	12,047	100.0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2,365	59.2	1,631	40.8	3,997	100.0
N	사업지원서비스	1,750	71.6	694	28.4	2,444	100.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45,579	73.3	16,565	26.7	62,143	100.0
P	교육서비스	2,884	66.7	1,439	33.3	4,323	100.0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23,069	57.6	16,996	42.4	40,065	10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245	58.7	876	41.3	2,121	100.0
S	기타 서비스	3,975	50.6	3,887	49.4	7,861	100.0
T	기타	1	39.8	1	60.2	2	100.0

사회복지분야 전체 생산유발효과 16.8조원 중 37%를 차지하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산업은 4.5조원 집행 시, 6.2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산업에서 집행된 대부분은 아동·보육 부문이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의 생산유발계수는 1.364이다(<표 III-22>). 아동·보육 부문은 대부분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해당되는데, 해당 세부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며, 거래처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파악되어, 공공행정 산업으로 귀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구조이며, 사회보장정보원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외에 행복e음,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등을 사용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의 위탁 기관으로 이체 후, 실집행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¹¹⁾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이외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 운영 등이 해당된다.¹²⁾

11) e나라도움 국고보조사업시스템에 집행내역이 수신되나, 집행내역 전체라 할 수 없음.

〈표 IV-11〉의 생산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을 먼저 살펴보면, 노동 부문을 제외한 기초생활보장, 노인, 취약계층지원,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의 집행이 많았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은 전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생산유발계수 1.748)에 해당된다. 사회복지분야의 대부분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으로 유입되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은 타산업 부문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생산파급효과가 높아, 결과적으로 전체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높았음을 의미한다(사회복지분야의 지출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 지출 → 타산업으로의 파급효과 ↑ → 전체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611억원의 재정집행 시 8,17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였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산업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이며, 전 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유발효과(8,170억)의 33.0%인 2,690억원을 기여한 셈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부문은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아동·보육, 고용부문이었는데, 주택을 제외(주택은 ‘부동산서비스’)하고 대부분의 생산유발효과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산업에서 전체의 많은 비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11〉 사회복지분야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단위: 억원, %)

구분	사회복지전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훈		주택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167,935	100	8,170	100	18,362	100	3,511	100	23,202	100
농림수산물	367	0.2	31	0.4	128	0.7	0	0.0	1	0.0
광산품	4	0.0	-	-	3	0.0	0	0.0	-	-
음식료품	1,072	0.6	10	0.1	491	2.7	7	0.2	276	1.2
섬유 및 가죽제품	344	0.2	40	0.5	79	0.4	1	0.0	0	0.0
목재 및 종이, 인쇄	599	0.4	16	0.2	190	1.0	37	1.1	6	0.0
석탄 및 석유제품	1	0.0	-	-	0	0.0	-	-	-	-

12)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보육 부문에 대한 분석은 제외함

구분	사회복지전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훈		주택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화학제품	367	0.2	1	0.0	157	0.9	1	0.0	37	0.2
비금속광물제품	122	0.1	6	0.1	33	0.2	9	0.3	10	0.0
1차금속제품	56	0.0	9	0.1	26	0.1	0	0.0	-	-
금속가공제품	434	0.3	1	0.0	121	0.7	21	0.6	31	0.1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64	0.2	0	0.0	76	0.4	54	1.5	2	0.0
전기장비	382	0.2	1	0.0	205	1.1	3	0.1	9	0.0
기계 및 장비	679	0.4	0	0.0	167	0.9	4	0.1	23	0.1
운송장비	305	0.2	0	0.0	154	0.8	0	0.0	-	-
기타제조업제품	481	0.3	2	0.0	130	0.7	13	0.4	8	0.0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장비수리	51	0.0	6	0.1	27	0.1	0	0.0	-	-
전력, 가스 및 증기	69	0.0	2	0.0	18	0.1	12	0.3	3	0.0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285	0.2	2	0.0	33	0.2	15	0.4	20	0.1
건설	11,128	6.6	2,347	28.7	1,078	5.9	374	10.7	1,497	6.5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4,441	2.6	148	1.8	960	5.2	200	5.7	29	0.1
운송서비스	838	0.5	32	0.4	55	0.3	175	5.0	46	0.2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712	1.0	345	4.2	308	1.7	47	1.3	4	0.0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1,979	1.2	15	0.2	347	1.9	57	1.6	18	0.1
금융 및 보험서비스	6,953	4.1	214	2.6	1,590	8.7	30	0.9	34	0.1
부동산서비스	12,047	7.2	424	5.2	203	1.1	28	0.8	10,327	44.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3,997	2.4	66	0.8	1,959	10.7	128	3.6	65	0.3
사업지원서비스	2,444	1.5	188	2.3	507	2.8	60	1.7	8	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62,143	37.0	9	0.1	2,266	12.3	710	20.2	84	0.4
교육서비스	4,323	2.6	1,112	13.6	387	2.1	494	14.1	14	0.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40,065	23.9	2,692	33.0	5,421	29.5	39	1.1	10,030	4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2,121	1.3	16	0.2	359	2.0	198	5.6	148	0.6
기타서비스	7,861	4.7	434	5.3	884	4.8	793	22.6	472	2.0
기타	2	0.0	-	-	1	0.0	-	-	-	-

〈표 IV-12〉 사회복지분야 산업별 생산유발효과(계속)

(단위: 억원, %)

구분	사회복지일반		아동·보육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고용		노동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11,043	100	50,606	100	24,173	100	11,851	100	16,613	100	404	100
농림수산물	0	0.0	-	-	188	0.8	2	0.0	16	0.1	0	0.0
광산품	-	-	-	-	0	0.0	0	0.0	0	0.0	-	-
음식료품	15	0.1	0	0.0	125	0.5	72	0.6	74	0.4	1	0.3
섬유 및 가죽제품	29	0.3	2	0.0	150	0.6	14	0.1	27	0.2	0	0.1
목재 및 종이, 인쇄	48	0.4	22	0.0	147	0.6	45	0.4	78	0.5	9	2.1
석탄 및 석유제품	0	0.0	-	-	0	0.0	0	0.0	0	0.0	-	-
화학제품	17	0.2	6	0.0	94	0.4	17	0.1	36	0.2	3	0.7
비금속광물제품	13	0.1	6	0.0	16	0.1	18	0.2	8	0.1	2	0.5
1차금속제품	0	0.0	1	0.0	5	0.0	9	0.1	6	0.0	1	0.3
금속가공제품	11	0.1	15	0.0	171	0.7	30	0.2	32	0.2	2	0.5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9	0.1	21	0.0	46	0.2	35	0.3	19	0.1	2	0.4
전기장비	9	0.1	12	0.0	33	0.1	62	0.5	45	0.3	3	0.7
기계 및 장비	5	0.0	6	0.0	408	1.7	31	0.3	32	0.2	2	0.4
운송장비	0	0.0	2	0.0	79	0.3	21	0.2	40	0.2	8	2.0
기타제조업제품	36	0.3	67	0.1	111	0.5	46	0.4	65	0.4	3	0.8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장비수리	1	0.0	0	0.0	9	0.0	5	0.0	2	0.0	1	0.2
전력, 가스 및 증기	6	0.1	2	0.0	16	0.1	9	0.1	2	0.0	1	0.3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60	0.5	41	0.1	57	0.2	53	0.4	4	0.0	0	0.0
건설	1,097	9.9	1,243	2.5	893	3.7	1,600	13.5	939	5.7	59	14.6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793	7.2	136	0.3	1,340	5.5	360	3.0	458	2.8	16	3.9
운송서비스	35	0.3	11	0.0	280	1.2	66	0.6	133	0.8	7	1.6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97	0.9	11	0.0	504	2.1	188	1.6	184	1.1	23	5.7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85	0.8	939	1.9	163	0.7	101	0.9	240	1.4	14	3.4
금융 및 보험서비스	763	6.9	255	0.5	849	3.5	143	1.2	3,068	18.5	6	1.5
부동산서비스	44	0.4	93	0.2	745	3.1	35	0.3	147	0.9	2	0.5

구분	사회복지일반		아동·보육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고용		노동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128	1.2	227	0.4	302	1.3	542	4.6	545	3.3	34	8.3
사업지원서비스	111	1.0	90	0.2	577	2.4	270	2.3	574	3.5	61	15.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5,355	48.5	42,029	83.1	1,801	7.5	1,523	12.9	8,366	50.4	0	0.1
교육서비스	285	2.6	48	0.1	253	1.0	1,118	9.4	606	3.6	7	1.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047	9.5	4,548	9.0	11,120	46.0	4,827	40.7	336	2.0	5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231	2.1	691	1.4	190	0.8	228	1.9	56	0.3	3	0.6
기타서비스	709	6.4	84	0.2	3,501	14.5	379	3.2	474	2.9	131	32.5
기타	0	0.0	0	0.0	-	-	0	0.0	1	0.0	-	-

2) 부가가치유발효과

사회복지분야 10.6조원 재정집행 시, 전 산업부문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9.4조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분석한 전체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36.9조원)의 25.6%를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의 부문별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아동·보육 91.2%, 고용 90.3%, 여성·가족·청소년은 86.0%, 취약계층지원은 85.6%, 노인은 84.8%로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이 노인 부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문별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상이한 결과로서, 노동, 기초생활보장, 노인, 취약계층지원 등이 생산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고용,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부가가치유발효과

(단위: 억원, %)

구분	집행액(A)	유발효과(B)	차이(B-A)	집행액 대비 유발효과(B/A)
사회복지분야 전체	106,429	94,396	-12,033	88.7
기초생활보장	4,611	3,956	-655	85.8
취약계층지원	10,663	9,132	-1,531	85.6
보훈	2,084	1,799	-285	86.3
주택	14,371	12,887	-1,485	89.7
사회복지일반	7,094	6,335	-759	89.3
아동·보육	35,678	32,524	-3,154	91.2
노인	13,824	11,725	-2,099	84.8
여성·가족·청소년	6,960	5,985	-975	86.0
고용	10,924	9,870	-1,055	90.3
노동	218	183	-5	84.0

사회복지분야 10.6조원 재정집행 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4조원 발생하였고, 아동·보육 34.5%, 주택 13.7%, 노인 12.4%, 고용 10.5%, 취약계층 9.7%, 사회복지일반 6.7%, 여성·가족·청소년 6.3%, 기초생활보장 4.2%, 보훈 1.9%, 노동 0.2%의 부가가치유발효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의 부가가치유발효과에 영향력이 높은 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이며(4.2조원), 유발효과가 가장 큰 사회복지분야의 부문은 아동·보육 2.8조원(67.6%), 고용 0.5조원(13.5%)이다. 사회복지일반 역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산업에서의 집행이 높은데, 세부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해당된다. 위 사업은 지역 주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에 바우처 결제를 하는 형태이다. 해당 공급자에 집행된 상세내역까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초생활보장(32.6%), 취약계층지원(28.4%), 노인(45.5%), 여성·가족·청소년(38.7%)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로 귀속되는데, 대표적인 거래처는 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이 해당된다. 주택은 부동산서비스 산업으로 53.4%가 귀속된 후, 전산업으로 파급되었는데 해당 거래처는 한국감정원이 해당된다. 고용은 거래처가 은행인 경우가 많았는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해당되는 세부사업으로는 전직실업자등능력 개발지원,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세대간상생고용지원 등이 해당된다.

〈표 IV-14〉 사회복지분야 부가가치유발효과

(단위: 억원, %)

구분	사회복지전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훈		주택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94,396	100	3,956	100	9,132	100	1,799	100.0	12,887	100
농림수산물	165	0.2	14	0.3	58	0.6	0	0.0	0	0.0
광산물	2	0.0	-	-	1	0.0	0	0.0	-	-
음식료품	369	0.4	3	0.1	169	1.8	2	0.1	95	0.7
섬유 및 가죽제품	100	0.1	12	0.3	23	0.3	0	0.0	0	0.0
목재 및 종이, 인쇄	214	0.2	6	0.1	68	0.7	13	0.7	2	0.0
석탄 및 석유제품	0	0.0	-	-	0	0.0	-	-	-	-
화학제품	116	0.1	0	0.0	50	0.5	0	0.0	12	0.1
비금속광물제품	42	0.0	2	0.1	11	0.1	3	0.2	4	0.0
1차금속제품	15	0.0	2	0.1	7	0.1	0	0.0	-	-
금속가공제품	154	0.2	0	0.0	43	0.5	8	0.4	11	0.1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106	0.1	0	0.0	30	0.3	21	1.2	1	0.0
전기장비	123	0.1	0	0.0	66	0.7	1	0.1	3	0.0
기계 및 장비	229	0.2	0	0.0	57	0.6	1	0.1	8	0.1
운송장비	87	0.1	0	0.0	44	0.5	0	0.0	-	-
기타제조업제품	161	0.2	1	0.0	44	0.5	4	0.2	3	0.0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장비수리	24	0.0	3	0.1	13	0.1	0	0.0	-	-
전력, 가스 및 증기	21	0.0	1	0.0	5	0.1	4	0.2	1	0.0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141	0.1	1	0.0	16	0.2	8	0.4	10	0.1
건설	4,584	4.9	967	24.4	444	4.9	154	8.6	617	4.8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2,218	2.3	74	1.9	480	5.3	100	5.6	15	0.1

구분	사회복지전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훈		주택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운송서비스	312	0.3	12	0.3	20	0.2	65	3.6	17	0.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653	0.7	132	3.3	117	1.3	18	1.0	2	0.0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1,047	1.1	8	0.2	184	2.0	30	1.7	10	0.1
금융 및 보험서비스	3,908	4.1	121	3.0	894	9.8	17	0.9	19	0.1
부동산서비스	8,027	8.5	283	7.1	135	1.5	18	1.0	6,881	53.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1,902	2.0	32	0.8	933	10.2	61	3.4	31	0.2
사업지원서비스	1,471	1.6	113	2.9	305	3.3	36	2.0	5	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42,001	44.5	6	0.1	1,532	16.8	480	26.7	57	0.4
교육서비스	2,668	2.8	686	17.3	239	2.6	305	16.9	9	0.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9,201	20.3	1,290	32.6	2,598	28.4	19	1.0	4,807	3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1,060	1.1	8	0.2	179	2.0	99	5.5	74	0.6
기타서비스	3,274	3.5	181	4.6	368	4.0	330	18.4	197	1.5
기타	1	0.0	-	-	0	0.0	-	-	-	-

〈표 IV-15〉 사회복지분야 부가가치유발효과(계속)

(단위: 억원, %)

구분	사회복지 일반		아동·보육		노인		여성가족 청소년		고용		노동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6,335	100	32,524	100	11,725	100	5,985	100	9,870	100	183	100
농림수산물	0	0.0	-	-	85	0.7	1	0.0	7	0.1	0	0.0
광산품	-	-	-	-	0	0.0	0	0.0	0	0.0	-	-
음식료품	5	0.1	0	0.0	43	0.4	25	0.4	26	0.3	0	0.2
섬유 및 가죽제품	8	0.1	1	0.0	44	0.4	4	0.1	8	0.1	0	0.1
목재 및 종이, 인쇄	17	0.3	8	0.0	52	0.4	16	0.3	28	0.3	3	1.7
석탄 및 석유제품	0	0.0	-	-	0	0.0	0	0.0	0	0.0	-	-
화학제품	5	0.1	2	0.0	30	0.3	5	0.1	11	0.1	1	0.5
비금속광물제품	4	0.1	2	0.0	6	0.0	6	0.1	3	0.0	1	0.4
1차금속제품	0	0.0	0	0.0	1	0.0	2	0.0	2	0.0	0	0.2
금속가공제품	4	0.1	5	0.0	61	0.5	11	0.2	11	0.1	1	0.4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4	0.1	9	0.0	18	0.2	14	0.2	8	0.1	1	0.4

구분	사회복지 일반		아동·보육		노인		여성가족 청소년		고용		노동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기장비	3	0.0	4	0.0	11	0.1	20	0.3	15	0.1	1	0.5
기계 및 장비	2	0.0	2	0.0	138	1.2	11	0.2	11	0.1	1	0.3
운송장비	0	0.0	1	0.0	22	0.2	6	0.1	11	0.1	2	1.2
기타제조업제품	12	0.2	22	0.1	37	0.3	15	0.3	22	0.2	1	0.6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장비수리	0	0.0	0	0.0	4	0.0	2	0.0	1	0.0	0	0.2
전력, 가스 및 증기	2	0.0	1	0.0	5	0.0	3	0.0	1	0.0	0	0.2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29	0.5	20	0.1	28	0.2	26	0.4	2	0.0	0	0.1
건설	452	7.1	512	1.6	368	3.1	659	11.0	387	3.9	24	13.3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396	6.3	68	0.2	669	5.7	180	3.0	229	2.3	8	4.3
운송서비스	13	0.2	4	0.0	104	0.9	24	0.4	49	0.5	2	1.3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37	0.6	4	0.0	192	1.6	72	1.2	70	0.7	9	4.8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45	0.7	497	1.5	86	0.7	53	0.9	127	1.3	7	3.9
금융 및 보험서비스	429	6.8	143	0.4	477	4.1	81	1.3	1,724	17.5	3	1.9
부동산서비스	30	0.5	62	0.2	496	4.2	23	0.4	98	1.0	1	0.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61	1.0	108	0.3	144	1.2	258	4.3	260	2.6	16	8.7
사업지원서비스	67	1.1	54	0.2	347	3.0	162	2.7	345	3.5	37	20.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3,619	57.1	28,406	87.3	1,217	10.4	1,030	17.2	5,655	57.3	0	0.1
교육서비스	176	2.8	29	0.1	156	1.3	690	11.5	374	3.8	4	2.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502	7.9	2,180	6.7	5,329	45.5	2,313	38.7	161	1.6	2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116	1.8	345	1.1	95	0.8	114	1.9	28	0.3	1	0.7
기타서비스	295	4.7	35	0.1	1,458	12.4	158	2.6	197	2.0	55	29.8
기타	0	0.0	0	0.0	-	-	0	0.0	0	0.0	-	-

3) 취업/고용 유발효과

사회복지분야의 전체 산업에 대한 취업유발효과(피용자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는 10.6조원 집행 시, 120,428명이 유발되었으며,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부문은 노동, 노인, 보훈, 기초생활보장,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은 주택과 아동·보육부문이 해당된다. 고용유발효과는 10.6조원 집행 시, 100,578명이 유발되었는데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부문은 노동,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기초생활보장 부문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은 아동·보육과 주택, 고용 부문이 해당된다. 즉, 노동,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에 대한 재정집행은 취업/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귀속되며, 고용친화적 사업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V-16〉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취업/고용 유발효과

(단위: 억원, 명)

구분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집행액 (A)	유발효과 (B)	유발계수 (B/A)	집행액 (A)	유발효과 (B)	유발계수 (B/A)
사회복지분야 전체	106,429	120,428	1.13	106,429	100,578	0.95
기초생활보장	4,611	6,273	1.36	4,611	4,895	1.06
취약계층지원	10,663	13,368	1.25	10,663	10,628	1.00
보훈	2,084	2,972	1.43	2,084	2,148	1.03
주택	14,371	14,025	0.98	14,371	11,346	0.79
사회복지일반	7,094	8,049	1.13	7,094	6,654	0.94
아동·보육	35,678	34,941	0.98	35,678	32,016	0.90
노인	13,824	20,109	1.45	13,824	15,574	1.13
여성·가족·청소년	6,960	9,263	1.33	6,960	7,587	1.09
고용	10,924	11,075	1.01	10,924	9,481	0.87
노동	218	354	1.62	218	248	1.14

사회복지분야 전체에서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35.1%)으로 10.6조원 재정 집행시, 42,260명의 취업자가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8.2%), 기타서비스(8.1%), 건설(5.1%) 순이다.

노동,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에서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산업을 살펴보면, 노동은 기타서비스(45.8%), 사업지원서비스(17.3%)순이며, 노인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46.8%), 기타서비스(21.5%)로 각각 9,410명, 4,32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다. 여성·가족·청소년 역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취업유발효과의 44.1%인 4,085명의 취업자가 유발되었고, 다음으로 교육서비스 산업에서 1,114명의 취업자 유발효과가 있었다.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주택과 아동·보육 부문을 살펴보면, 주택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서 60.5%, 부동산서비스에서 25.5%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아동·보육은 81.8%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에서 발생하였다. 취업유발효과가 큰 부문은 대체로 여러 산업에서 다양하게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한 반면, 취업유발효과가 낮은 부문의 산업은 60~80% 이상이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용유발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분야 전체에서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으로 39.3%를 차지하며, 39,576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29.5%로 29,661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한다. 부문별 고용유발효과는 취업유발효과와 매우 유사한 패턴이다.

〈표 IV-17〉 사회복지분야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 %)

구분	사회복지전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훈		주택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120,428	100	6,273	100	13,368	100	2,972	100.0	14,025	100
농림수산물	507	0.4	42	0.7	177	1.3	0	0.0	1	0.0
광산물	2	0.0	-	-	1	0.0	0	0.0	-	-
음식료품	637	0.5	6	0.1	292	2.2	4	0.1	164	1.2
섬유 및 가죽제품	156	0.1	18	0.3	36	0.3	1	0.0	0	0.0
목재 및 종이, 인쇄	264	0.2	7	0.1	84	0.6	16	0.6	3	0.0
석탄 및 석유제품	0	0.0	-	-	0	0.0	-	-	-	-

구분	사회복지전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훈		주택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화학제품	104	0.1	0	0.0	44	0.3	0	0.0	10	0.1
비금속광물제품	47	0.0	2	0.0	13	0.1	4	0.1	4	0.0
1차금속제품	13	0.0	2	0.0	6	0.0	0	0.0	-	-
금속가공제품	164	0.1	0	0.0	45	0.3	8	0.3	12	0.1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61	0.1	0	0.0	17	0.1	12	0.4	0	0.0
전기장비	121	0.1	0	0.0	65	0.5	1	0.0	3	0.0
기계 및 장비	244	0.2	0	0.0	60	0.5	1	0.0	8	0.1
운송장비	93	0.1	0	0.0	47	0.3	0	0.0	-	-
기타제조업제품	269	0.2	1	0.0	73	0.5	7	0.2	4	0.0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장비수리	34	0.0	4	0.1	18	0.1	0	0.0	-	-
전력, 가스 및 증기	11	0.0	0	0.0	3	0.0	2	0.1	0	0.0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166	0.1	1	0.0	19	0.1	9	0.3	12	0.1
건설	6,174	5.1	1,302	20.8	598	4.5	208	7.0	830	5.9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4,172	3.5	139	2.2	902	6.7	188	6.3	27	0.2
운송서비스	618	0.5	24	0.4	40	0.3	129	4.3	34	0.2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507	1.3	304	4.8	271	2.0	42	1.4	4	0.0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1,037	0.9	8	0.1	182	1.4	30	1.0	10	0.1
금융 및 보험서비스	3,057	2.5	94	1.5	699	5.2	13	0.4	15	0.1
부동산서비스	4,168	3.5	147	2.3	70	0.5	10	0.3	3,573	25.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2,440	2.0	41	0.6	1,196	9.0	78	2.6	39	0.3
사업지원서비스	2,449	2.0	188	3.0	508	3.8	60	2.0	8	0.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42,260	35.1	6	0.1	1,541	11.5	483	16.2	57	0.4
교육서비스	4,308	3.6	1,108	17.7	386	2.9	492	16.6	14	0.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33,905	28.2	2,278	36.3	4,588	34.3	33	1.1	8,488	6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1,736	1.4	13	0.2	294	2.2	162	5.4	121	0.9
기타서비스	9,702	8.1	535	8.5	1,091	8.2	979	32.9	582	4.2
기타	1	0.0	-	-	0	0.0	-	-	-	-

〈표 IV-18〉 사회복지분야 취업유발효과(계속)

(단위: 명, %)

구분	사회복지일반		아동·보육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고용		노동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8,049	100	34,941	100	20,109	100	9,263	100	11,075	100	354	100
농림수산물	1	0.0	-	-	260	1.3	3	0.0	22	0.2	0	0.0
광산품	-	-	-	-	0	0.0	0	0.0	0	0.0	-	-
음식료품	9	0.1	0	0.0	74	0.4	43	0.5	44	0.4	1	0.2
섬유및가죽제품	13	0.2	1	0.0	68	0.3	6	0.1	12	0.1	0	0.1
목재 및 종이, 인쇄	21	0.3	10	0.0	65	0.3	20	0.2	34	0.3	4	1.1
석탄 및 석유제품	0	0.0	-	-	0	0.0	0	0.0	0	0.0	-	-
화학제품	5	0.1	2	0.0	27	0.1	5	0.1	10	0.1	1	0.2
비금속광물제품	5	0.1	2	0.0	6	0.0	7	0.1	3	0.0	1	0.2
1차금속제품	0	0.0	0	0.0	1	0.0	2	0.0	1	0.0	0	0.1
금속가공제품	4	0.1	6	0.0	64	0.3	11	0.1	12	0.1	1	0.2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	0.0	5	0.0	11	0.1	8	0.1	4	0.0	0	0.1
전기장비	3	0.0	4	0.0	10	0.1	20	0.2	14	0.1	1	0.3
기계 및 장비	2	0.0	2	0.0	147	0.7	11	0.1	12	0.1	1	0.2
운송장비	0	0.0	1	0.0	24	0.1	7	0.1	12	0.1	2	0.7
기타제조업제품	20	0.3	37	0.1	62	0.3	26	0.3	36	0.3	2	0.5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장비수리	0	0.0	0	0.0	6	0.0	3	0.0	1	0.0	0	0.1
전력, 가스 및 증기	1	0.0	0	0.0	2	0.0	1	0.0	0	0.0	0	0.1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35	0.4	24	0.1	33	0.2	31	0.3	2	0.0	0	0.0
건설	609	7.6	689	2.0	495	2.5	888	9.6	521	4.7	33	9.3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745	9.3	128	0.4	1,259	6.3	338	3.6	430	3.9	15	4.2
운송서비스	26	0.3	8	0.0	206	1.0	48	0.5	98	0.9	5	1.4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86	1.1	9	0.0	444	2.2	166	1.8	162	1.5	20	5.7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45	0.6	492	1.4	85	0.4	53	0.6	126	1.1	7	2.0
금융 및 보험서비스	336	4.2	112	0.3	373	1.9	63	0.7	1,349	12.2	3	0.8
부동산서비스	15	0.2	32	0.1	258	1.3	12	0.1	51	0.5	1	0.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78	1.0	139	0.4	185	0.9	331	3.6	333	3.0	21	5.8

구분	사회복지일반		아동·보육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고용		노동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사업지원서비스	111	1.4	90	0.3	578	2.9	270	2.9	575	5.2	61	17.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3,642	45.2	28,581	81.8	1,225	6.1	1,036	11.2	5,689	51.4	0	0.1
교육서비스	284	3.5	48	0.1	252	1.3	1,114	12.0	604	5.5	7	1.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886	11.0	3,849	11.0	9,410	46.8	4,085	44.1	284	2.6	4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189	2.4	566	1.6	156	0.8	187	2.0	46	0.4	2	0.6
기타서비스	875	10.9	104	0.3	4,320	21.5	468	5.1	585	5.3	162	45.8
기타	0	0.0	0	0.0	-	-	0	0.0	0	0.0	-	-

〈표 IV-19〉 사회복지분야 고용유발효과

(단위: 명, %)

구분	사회복지전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훈		주택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100,578	100	4,895	100	10,628	100	2,148	100	11,346	100
농림수산물	85	0.1	7	0.1	30	0.3	0	0.0	0	0.0
광산품	1	0.0	-	-	1	0.0	0	0.0	-	-
음식료품	290	0.3	3	0.1	133	1.3	2	0.1	75	0.7
섬유 및 가죽제품	116	0.1	14	0.3	27	0.3	0	0.0	0	0.0
목재 및 종이, 인쇄	197	0.2	5	0.1	63	0.6	12	0.6	2	0.0
석탄 및 석유제품	0	0.0	-	-	0	0.0	-	-	-	-
화학제품	83	0.1	0	0.0	35	0.3	0	0.0	8	0.1
비금속광물제품	36	0.0	2	0.0	10	0.1	3	0.1	3	0.0
1차금속제품	11	0.0	2	0.0	5	0.0	0	0.0	-	-
금속가공제품	132	0.1	0	0.0	37	0.3	6	0.3	10	0.1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50	0.0	0	0.0	14	0.1	10	0.5	0	0.0
전기장비	99	0.1	0	0.0	53	0.5	1	0.0	2	0.0
기계 및 장비	199	0.2	0	0.0	49	0.5	1	0.1	7	0.1
운송장비	77	0.1	0	0.0	39	0.4	0	0.0	-	-
기타제조업제품	192	0.2	1	0.0	52	0.5	5	0.2	3	0.0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장비수리	30	0.0	3	0.1	16	0.1	0	0.0	-	-
전력, 가스 및 증기	9	0.0	0	0.0	2	0.0	2	0.1	0	0.0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135	0.1	1	0.0	16	0.1	7	0.3	10	0.1

구분	사회복지전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훈		주택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건설	4,846	4.8	1,022	20.9	470	4.4	163	7.6	652	5.7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2,626	2.6	88	1.8	568	5.3	118	5.5	17	0.2
운송서비스	384	0.4	15	0.3	25	0.2	80	3.7	21	0.2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810	0.8	163	3.3	145	1.4	22	1.0	2	0.0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855	0.9	6	0.1	150	1.4	25	1.1	8	0.1
금융 및 보험서비스	2,641	2.6	81	1.7	604	5.7	11	0.5	13	0.1
부동산서비스	2,978	3.0	105	2.1	50	0.5	7	0.3	2,553	22.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2,012	2.0	33	0.7	987	9.3	64	3.0	32	0.3
사업지원서비스	2,164	2.2	166	3.4	448	4.2	53	2.5	7	0.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39,576	39.3	6	0.1	1,443	13.6	452	21.0	53	0.5
교육서비스	3,285	3.3	845	17.3	294	2.8	375	17.5	11	0.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29,661	29.5	1,993	40.7	4,013	37.8	29	1.3	7,425	65.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1,107	1.1	9	0.2	187	1.8	103	4.8	77	0.7
기타서비스	5,893	5.9	325	6.6	663	6.2	595	27.7	354	3.1
기타	1	0.0	-	-	0	0.0	-	-	-	-

〈표 IV-20〉 사회복지분야 고용유발효과(계속)

(단위: 명, %)

구분	사회복지일반		아동·보육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고용		노동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	6,654	100	32,016	100	15,574	100	7,587	100	9,481	100	248	100
농림수산물	0	0.0	-	-	44	0.3	1	0.0	4	0.0	0	0.0
광산물	-	-	-	-	0	0.0	0	0.0	0	0.0	-	-
음식료품	4	0.1	0	0.0	34	0.2	20	0.3	20	0.2	0	0.1
섬유 및 가죽제품	10	0.1	1	0.0	51	0.3	5	0.1	9	0.1	0	0.1
목재 및 종이, 인쇄	16	0.2	7	0.0	48	0.3	15	0.2	26	0.3	3	1.1
석탄 및 석유제품	0	0.0	-	-	0	0.0	0	0.0	0	0.0	-	-
화학제품	4	0.1	1	0.0	21	0.1	4	0.1	8	0.1	1	0.3
비금속광물제품	4	0.1	2	0.0	5	0.0	5	0.1	2	0.0	1	0.2
1차금속제품	0	0.0	0	0.0	1	0.0	2	0.0	1	0.0	0	0.1
금속가공제품	3	0.0	4	0.0	52	0.3	9	0.1	10	0.1	1	0.3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	0.0	4	0.0	9	0.1	7	0.1	4	0.0	0	0.1

구분	사회복지일반		아동·보육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고용		노동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기장비	2	0.0	3	0.0	8	0.1	16	0.2	12	0.1	1	0.3
기계 및 장비	2	0.0	2	0.0	120	0.8	9	0.1	9	0.1	1	0.2
운송장비	0	0.0	1	0.0	20	0.1	5	0.1	10	0.1	2	0.8
기타제조업제품	15	0.2	27	0.1	44	0.3	18	0.2	26	0.3	1	0.5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장비수리	0	0.0	0	0.0	5	0.0	3	0.0	1	0.0	0	0.2
전력, 가스 및 증기	1	0.0	0	0.0	2	0.0	1	0.0	0	0.0	0	0.1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28	0.4	20	0.1	27	0.2	25	0.3	2	0.0	0	0.0
건설	478	7.2	541	1.7	389	2.5	697	9.2	409	4.3	26	10.4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469	7.0	80	0.3	792	5.1	213	2.8	271	2.9	9	3.8
운송서비스	16	0.2	5	0.0	128	0.8	30	0.4	61	0.6	3	1.2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46	0.7	5	0.0	239	1.5	89	1.2	87	0.9	11	4.4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37	0.6	406	1.3	71	0.5	44	0.6	104	1.1	6	2.4
금융 및 보험서비스	290	4.4	97	0.3	322	2.1	54	0.7	1,165	12.3	2	0.9
부동산서비스	11	0.2	23	0.1	184	1.2	9	0.1	36	0.4	1	0.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65	1.0	114	0.4	152	1.0	273	3.6	275	2.9	17	6.8
사업지원서비스	98	1.5	80	0.2	511	3.3	239	3.1	508	5.4	54	21.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3,410	51.2	26,766	83.6	1,147	7.4	970	12.8	5,328	56.2	0	0.1
교육서비스	217	3.3	36	0.1	192	1.2	849	11.2	460	4.9	5	2.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775	11.7	3,367	10.5	8,232	52.9	3,574	47.1	248	2.6	3	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121	1.8	361	1.1	99	0.6	119	1.6	29	0.3	1	0.5
기타서비스	532	8.0	63	0.2	2,624	16.9	284	3.7	355	3.7	98	39.7
기타	0	0.0	0	0.0	-	-	0	0.0	0	0.0	-	-

V. 결론

1.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시도되었다. 정부지출은 해당 산업에 직접적으로 생산을 유발시키고 고용을 유발시키는 효과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타 산업에도 생산 및 일자리 창출 등 연속적으로 유발시키게 되는 파급효과를 지니게 되는데, 여기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으로 계량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부문의 거시적인 상호관계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범위는 e나라도움시스템, e호조, K에듀파인 자료를 모두 포괄한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사업의 거래처 집행액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단, 사업체의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 특성별 경제적 효과 분석이 목적임에 따라,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중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집행된 것은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업정보인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의 가장 최신연도 자료인 2019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의 기업정보(조직형태별, 중소기업별, 시도별, 산업별)에 따른 집행현황을 살펴보았다. 첫째, 조직형태별로 보면, 거래처가 회사법인인 경우 45.5%(19.9조원), 회사이외법인 41.3%(18.1조원) 형태의 집행액이 전체의 86.8%를 차지한다. 이외 국가지방자치단체 7.4%(3.2조원), 개인사업체 4.8%(2조원), 비법인단체 1.0%(0.4조원)이 있다. 둘째,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거래처가 중소기업인 경우의 집행건 수가 전체의 62.6%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으로의 집행액은 중기업 10.1%(4.4조원), 소기업 14.0%(6.1조원), 소상공인 10.2%(4.5조원)으로 전체 43.8조원 중 34.2%(15

조원)이 해당된다. 거래건은 많지만, 실 집행액은 매우 적은 금액이다. 셋째,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은 24.9%가 서울에서 집행되었고, 다음은 경기도 12.0%, 강원도 7.7%, 전라남도과 경상남도가 각 6.4%이다. 거래처의 비중이 낮은 시도는 울산(1.3%), 세종(2.2%), 인천(2.5%)이 해당된다. 넷째,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른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의 산업별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업에 8.6조원(19.7%)으로 가장 많이 집행되었고, 다음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6.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6%), 제조업(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업연관분석 결과, 산업연관표 분류에 따른 2019년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의 집행액은 총 43.8조원으로 건설에서 8.6조원이 집행(19.7%)되었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은 7.0조원(16.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4.0조원(9.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2.9조원(6.6%)으로 전체 34개 산업 중 50% 이상이 이들 4개 산업에 집중되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연관분석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고용유발효과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거래처에 대한 재정집행이 전체 산업 부문의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 즉,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거래처 집행액이 각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생산유발계수를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총 43.8조원 재정집행 시, 총 76.7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산업은 건설이 8.6조원 집행시, 17.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었으며, 전체 생산유발효과(76.7조원)에서 22.5%를 차지한다(생산유발효과 : 건설 > 공공행정 및 국방 및 사회보장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 농림수산물 > 도소매 및 상품증개서비스 순임).

둘째,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일수록 같은 생산수준일 때 더 많은 가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의미한다. 한 국가의 부가가치 합은 국내총생산과 일치하게 되는데, 2019년 1년 동안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으로 집행

한 43.8조원은 36.9조원의 부가가치 즉, 국내총생산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재정집행 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산업으로는 건설(19.3%), 공공행정 및 국방분야(17.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9.5%) 순이다(부가가치유발효과 : 건설 > 공공행정 및 국방 및 사회보장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 농림수산물 >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순임).

셋째, 정부 재정집행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산업 파급효과는 필연적으로 유관 산업의 생산과 노동수요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43.8조원 재정집행으로 발생한 취업유발효과는 취업자 532,723명이며, 고용유발효과는 374,553명이다. 농림수산물은 전체 취업유발효과에 12.1%의 영향을 미치며, 전체 고용유발효과에는 2.9%의 영향을 미친다(2019년 취업유발계수는 농림수산물(26.08)>기타서비스(24.63)>음식점 및 숙박서비스(19.01)>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16.48)>사업지원서비스(15.25) 순이며, 2019년 고용유발계수는 기타서비스(14.96)>사업지원서비스(13.47)>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2.94)>교육서비스(11.40)>제조 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수리(10.65) 순임).

마지막으로 사업형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분야의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정 특성이 다른 여러 유형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경제적 혹은 행정적 관점에서 표준적으로 접근하면, 국고보조사업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분야는 타 분야와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복지분야 총 10.6조원 재정집행 시, 총 16.8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직·간접적으로 유발되었다. 부문별 살펴보면, 노동 부문에 가장 적은 재정인 218억원이 집행되었으나, 404억원(1.85배)의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문은 1.77배, 취약계층지원은 1.72배, 노인 부문은 1.70배 순이다. 생산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노인, 취약계층지원,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의 집행이 많았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은 전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생산유발계수 1.748)에 해당된다. 사회복지분야의 대부분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으로 유입되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은 타산업 부문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생산파급효과가 높아, 결과적으로 전체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복지분야 10.6조원 재정집행 시, 전 산업부문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4조원으로 추정된다. 사회복지분야의 부문별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살펴보면, 고용 90.3%, 주택 89.7%, 사회복지일반 89.3%, 여성·가족·청소년은 86.0%, 취약계층지원은 85.6%, 노인은 84.8%로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이 노인 부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높은 고용,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훈 등의 거래처가 대부분 부가가치유발계수값이 큰 부동산서비스, 교육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사업지원서비스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분야의 전체 산업에 대한 취업유발효과(피용자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는 10.6조원 집행 시, 120,428명이 유발되었으며,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부문은 노동, 노인, 보훈, 기초생활보장,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은 주택과 아동·보육부문이 해당된다. 고용유발효과는 10.6조원 집행 시, 100,578명이 유발되었는데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부문은 노동,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기초생활보장 부문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은 아동·보육과 주택, 고용 부문이 해당된다. 즉, 노동,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에 대한 재정집행은 취업/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귀속되며, 고용친화적 사업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의 최종수혜자인 거래처 집행액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최초연구이며, 국고보조사업 내역 등 단일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한 정보를 기업통계등록부와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국고보

조사업 거래처의 집행액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산업의 수요창출 효과가 과대 계상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특정 산업에 투입된 실제 집행액에 대한 산업효과를 측정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경우, 각 산업별 집행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각기 상이하며, 이들 지출의 배분구성을 달리함으로써 동일한 재정집행이라도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같은 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재정 특성이 다른 여러 유형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경제적 혹은 행정적 관점에서 표준적으로 접근하면, 국고보조사업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적 관점에서 동일한 재정집행 시,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만 분석된 연구로 국고보조사업의 본래 목적인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 신규사업의 보급·장려, 지방자치단체 재정원조, 국민의 편리를 위한 사무위탁 등의 본질을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아님을 강조한다.

2. 연구 한계 및 향후 보완점

앞서 1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분석자료의 시의성 문제, 산업연관 분석 방법론의 한계, 국고보조사업과 타기관(통계청, 한국은행) 자료를 결합한 것에 목적을 둔 최초 연구로 다각도의 분석이 수행되지 못한 점 등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국고보조사업 본래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분석한 것이므로 해석 시, 국고보조사업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활용·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 기초하여 향후 연구과제에서의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 동일 분야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했

을 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일연도 연구 결과로는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인지, 일회성으로 나타난 다른 외부영향에 의한 효과인지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분석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최대 5년치 자료가 축적된다면, 이를 활용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형 국고보조금이 어느 산업에 투입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더욱 효과적인가를 외생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고보조금을 유형별(지출형태별, 전달체계별 등)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과 같은 위탁기관을 통해 집행되는 경우는 실집행 귀착대상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위탁관리운영기관에서 실집행된 정산자료를 e나라도움시스템의 집행내역 정보와 연계하여 하나의 table에서 관리된다면, 본 자료의 추가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권오성. (2016). 「재정사업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김윤재. (2011). 「노인복지 예산지출의 경제적 효과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6권.
- 김민경. (2019). 「재정집행 자료를 이용한 재정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재정정보원 내부자료.
- 박경호. (2009). 「교육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7(3). 253-269.
- 서정섭·김성주. (20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의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재원. (2015).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의 현황 및 운영 특성, 그리고 개편과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0권 제2호.
- 이재원. (2016). 「국고보조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지방재정연구원.
- 이재원·박병희·이종하. (2021).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특성별 맞춤형 재정관리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복지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6(1). 117-151.
- 원종학·하연섭·김영록. (201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성호. (2020).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대안」. 한국재정정보원.
- 한승희. (2018). 「국고보조금 이해하기-제도, 사업, 시스템-」. 한국재정정보원.
- 한승희. (2019).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현황과 집행실적 분석」. 한국재정정보원.

Miller, R. and Blair, P. (1985)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기관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 「정부의 재정지출에 따른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용역보고서.

기획재정부. (2015).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보고서(I)」.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기획재정부. (2016).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2017). 「e나라도움을 보조사업자 교재(매뉴얼)」.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 (2020). 「2020년도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계획(안)」.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이용자 안내서.

한국은행. (2015). 「2013년 산업연관표 해설편」.

한국은행. (2019). 「2015년 산업연관표」.

[웹사이트]

한국은행 <https://ecos.bok.or.kr>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https://kssc.kosta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지방재정365 <https://lofin.mois.go.kr>

열린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s://www.gosims.go.kr>

〈부 록〉

〈부록 표-1〉 한국산업표준분류-산업연관표 매칭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연관표	
대분류(21)		중분류(77)	대분류(32)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1 농업	A	농림수산물
		02 임업		
		03 어업		
B	광업(05~08)	05 석탄, 원유 및 연가스 광업	B	광산물
		06 금속 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10~34)	10 식료품 제조업	C01	음식료품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02	섬유 및 가죽제품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04	석탄 및 석유제품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05	화학제품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06	비금속광물제품
		24 1차 금속 제조업	C07	1차 금속제품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08	금속가공제품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10	전기장비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11	기계 및 장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12	운송장비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연관표	
대분류(21)		중분류(77)		대분류(32)	
		32	가구 제조업	C13	기타 제조업 제품
		33	기타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D	전력, 가스 및 증기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36	수도업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41~42)	41	종합 건설업	F	건설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45~47)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 및 창고업(49~52)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	운송서비스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55	숙박업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정보통신업(58~63)	58	출판업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우편 및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64~66)	64	금융업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68)	68	부동산업	L	부동산서비스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71	전문 서비스업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연관표	
대분류(21)		중분류(77)		대분류(32)	
	(70~73)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	사업지원서비스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8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P	교육 서비스업(85)	85	교육 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86	보건업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94	협회 및 단체	S	기타 서비스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97~98)	97	가구 내 고용활동	T	기타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99)	99	국제 및 외국기관		

감사 인사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국고보조금 자료추출에 도움을 주신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 김남우 부장, 장성준 차장, 남현재 과장,
한종혁 사원, 박충열 센터장(전 집행정산관리부 부장)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발 간 월 2021년 12월

발 행 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편 집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

발 행 처 한국재정정보원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인 쇄 처 유월애 Tel. 02-859-2278

I S B N 979-11-91094-10-7

문의: 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 보조금정보분석부 02-6908-8624
analysis@kpfis.or.kr

